

吳宗祿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朝鮮初期 奴主關係에 대한 研究

- 人命犯罪의 사례를 중심으로 -

2006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全 世 暎

朝鮮初期 奴主關係에 대한 研究

- 人命犯罪의 사례를 중심으로 -

吳宗祿 教授指導

이 논문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년 5월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全 世 暎

認 准 書

全世暎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文概要

본 논문은 조선초기의 노비와 노비소유주 사이에서 발생한 인명범죄의 사례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지배층의 노비소유에 어떤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노비소유자에 대한 노비의 저항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奴主關係의 갈등 표출의 방식과 변화해가는 奴主關係의 추이를 규명하였다.

2장에서는 태조대로부터 성종대에 이르는 100여년의 기간 동안 기록된 인명범죄를 검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奴主關係에서 발생한 범죄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奴主關係 아래에서 적지 않은 인명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노비와 주인의 관계가 상당한 갈등과 마찰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奴主關係에서 발생한 인명범죄의 원인을 노비에 대한 주인의 범죄와 주인에 대한 노비의 범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노비에 대한 주인의 인명범죄는 私刑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濫殺과 酷刑의 형태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노비의 도망 즉 主家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에 있었다. 주인에 대한 노비의 인명범죄는 주로 주인의 신체적·경제적 침탈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었다.

4장에서는 奴主關係 인명범죄의 원인과 양상이 15세기 후반 이후 점차 큰 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주목하여 奴主關係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15세기 후반은 지배층의 토지집적과 정부의 가혹한 수취체제에 따른 농

민의 토지 이탈이 가속화되는 시기였다. 몰락한 양인들의 사노비로의 투탁과 雇工化, 良賤交婚으로 인한 奴妻 및 婢夫의 양산으로 인하여 私賤人口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비의 소유를 정당화하고 수탈을 합리화 하던 奴主之分의 명분은 동요되기 시작하였고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따라 노비의 신분상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대되어 갔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 노비처우에 대한 인식 및 노비소유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노비들로 하여금 저항의 강도를 한층 거세게 드러내게 하였고 이 시기의 殺主의 양상이 점차 집단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조선초기의 奴主關係는 노비의 효율적인 소유를 실현하기 위한 본주의 통제 강화와 이로부터 벗어나기를 피하는 노비의 저항 심화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와같은 奴主關係는 15세기 후반의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변화를 겪게 되었다. 양인인구가 천인으로 하향 분화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었던 奴主之分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 노비의 신분상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어 감에 따라 15세기 후반 이후 奴主關係는 점차 본주의 노비 통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노비의 저항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目 次

論文概要

I. 序論	1
II. 人命犯罪에서의 奴主關係의 비중	6
III. 奴主關係 人命犯罪의 형태별 原因 分析	14
1. 主人의 노비에 대한 범죄	14
2. 노비의 주인에 대한 범죄	25
IV. 人命犯罪를 통해 본 奴主關係의 變化	38
V. 結論	55

參考文獻

ABSTRACT

I. 序論

노비는 토지와 함께 조선시대의 중요한 경제적인 원천을 이루는 존재로서 지배층의 존립근거이자 신분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기반이었다.¹⁾ 조선시대의 지배층이 양반으로서의 체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생산활동에 노비의 노동력이 투입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조선초기의 노비 인구는 전체인구의 거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공사노비의 인구 구성에서 사노비는 80%이상을 점하는 규모로 추정될 만큼²⁾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다.

조선시대에 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컸던 만큼 노비에 관한 연구는 조선시대의 사회성격과 신분제를 해명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노비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³⁾ 및 노비 제도의 정비 및 변천과정⁴⁾, 노비의 존재양태에 관한 연구⁵⁾ 등이 이루어져

- 1) 『世祖實錄』卷 46 世祖 14年 6月 丙午 “司憲府大司憲梁誠之等上疏曰……我國家奴婢之法 其來尙矣 而士大夫倚以爲生者也……夫田地人之命脈 奴婢 士之手足 輕重相等 不可偏廢”；『世祖實錄』卷 43 世祖 13年 8月 己亥 “大司憲梁誠之上書曰……夫大家世族之爲大家世族 以其有奴婢也”
- 2) 鄭鉉在, 「朝鮮初期의 奴婢에 관한 一考察 -奴婢人口 문제를 中心으로-」, 『慶尙史學』4·5 合輯, 1989, 37~38쪽 참조.
- 3) 金錫亨, 「奴婢論」, 『朝鮮封建時代農民의 階級構成』, 日本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1957.
李載燾, 「朝鮮前期의 奴婢研究」, 『論文集』4, 崇田大學校, 1971.
李榮薰,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前期 奴婢의 經濟的 性格」, 『韓國史學』9, 1987.
安承俊, 「朝鮮前期 私奴婢의 社會經濟的 性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4) 周藤吉之, 「鮮初に於ける奴婢の辨正と推刷とについて(上)」 『靑丘學叢』22, 1935,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研究」, 『歷史學研究』9-1,2,3,4, 1939.
李樹健, 「李朝 太宗期에 있어서의 對奴婢施策」, 『大丘史學』1, 1969.
平木實, 『朝鮮後期 奴婢制 研究』, 지식산업사, 1982.
全炯澤, 『朝鮮後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89.
朴晉勳, 「麗末鮮初 奴婢政策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5) 韓榮國, 「朝鮮 中葉의 奴婢結婚樣態(上,下) ,-1609년의 蔚山戶籍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歷史學報』75·76·77, 1977, 1978.
全炯澤, 「한국 奴婢의 존재양태」, 『노비·농노·노예 -隸屬民의 比較史-』, 일조각, 1998.

노비의 실체를 밝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구의 경향이 제도사적인 관점에서 또는 노비소유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성격을 띠는 등 노비의 현실적인 존재실태와 내면의 실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奴主關係에 관한 연구는 노비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해명하기 위한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이 시기의 노비와 주인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갈등을 내재하고 있었고, 그 표출의 방식이 어떠한 것이며, 노비의 저항이 어떤 처지와 상황 하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노비존재의 실태를 밝히는데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존에 노비와 관련된 범죄를 통하여 사회상 및 사회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⁶⁾ 연구의 초점이 刑律의 적용에 맞추어져 있거나 범죄의 사례와 行刑만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사회상과 관련한 분석과 해석은 시도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범죄를 통해 사회상에 접근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소략하다.⁷⁾ 이는 조선시대의 범죄에 관한 연구가 법전이나⁸⁾ 형사제도 일반에 관한 연구⁹⁾ 등 법제사적인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審理錄』에 수록된 범죄의 분석을 통해 사회

池承鍾, 『朝鮮前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95.

金容晚, 『朝鮮時代 私奴婢研究』, 집문당, 1997.

6) 崔楨鏞, 「朝鮮初期 奴婢犯罪의 分析 :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7.

俞起濬, 「朝鮮初期 奴婢犯罪와 刑政」, 『湖西史學』 16, 1988.

全用宇, 「朝鮮初期 兩班들의 노비관련 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 『湖西史學』 17, 1989.

沈羲基, 「16세기 李文樞家의 奴婢에 대한 體罰의 實態分析」, 『國史館論叢』 97, 2001.

7) 鄭泰憲, 「朝鮮初期 社會犯罪에 관한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8.

權純哲, 「19세기 前半 서울地域의 犯罪相과 政府의 對應」,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8) 金淇春, 『朝鮮時代 刑典』, 삼영사, 1990.

朴秉濠, 「朝鮮初期 法制定과 社會相 -大明律의 實用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0, 1998.

鄭肯植·趙志晚, 「朝鮮前期 『大明律』의 受容과 變容」, 『震檀學報』 96, 2003.

9) 徐壹教,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 박영사, 1974.

吳甲均, 『朝鮮時代司法制度研究』, 삼영사, 1995.

상을 살펴본 연구¹⁰⁾ 및 『欽欽新書』에 실린 성관련 살인사건을 분석한 연구¹¹⁾, 검안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들이¹²⁾ 발표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審理錄』에 수록된 범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죄에 반영된 일탈·갈등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한 심재우의 연구는 본고의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를 주었다.¹³⁾

범죄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마찰의 표출방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인명범죄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더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명범죄의 발생원인과 실태 및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게 되면 사회구성원간의 마찰 양상을 포함한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갈등의 문제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관계의 갈등표출의 방식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⁴⁾ 필자가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밝히는데 인명범죄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주관계는 노비가 주인에게 소유되어 지배당하는 존재였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에서 갈등과 마찰이 내재되어 있을 여지가 가장 많은 사회적 관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인명범죄를 통하여 이 시기의 노주 관계를 살펴보면 지배층의 노비소유의 실제와 노비의 저항의 실태를 파

10) 趙珖, 「18세기 전후 서울의 犯罪相」, 『典農史論』 2, 1996.
 심재우, 「『審理錄』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서울의 범죄 양상」, 『서울학연구』 17, 2001.

11) 김선경, 「조선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 『역사연구』 8, 2000.

12) 심재우, 「조선후기 인명(人命) 사건의 처리와 '검안(檢案)」, 『역사와 현실』 23, 1997.
 金澁, 「奎章閣 소장 '檢案'의 기초적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4, 1998.
 최재천 외, 『살인의 진화심리학 - 조선후기의 가족살해와 배우자 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3) 沈載祐, 「『審理錄』研究 - 正祖代 死刑犯罪 처벌과 社會統制의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5.

14) 물론 사회의 갈등양상이 모두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뿐더러 모든 사회구성원간의 마찰이 범죄의 표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의 동기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당시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의 이면이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초기의 노비는 물적인 성격과 인간적인 성격의 양면성을 가지는 존재였다. 특히 노비의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며 국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었다. 노비가 말보다 싼 값에 매매되는 것을 두고 가축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므로 도리를 거스르는 일이라 하여 노비의 매매가를 말 값 이상으로 정하여 법으로 삼게 한 것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¹⁵⁾ 또한 세종도 “노비는 비록 賤人이나 天民이 아님이 없다.”라 하여 노비 역시 군주의 통치 권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인간, 즉 天民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¹⁶⁾ 노비의 인간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이와같은 관념은 곧 주노관계를 군신관계와 동일시하여 강상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규정한 奴主之分의 사회의식이 성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노비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비로소 노비와 노비소유주 사이에 명분론적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이처럼 노비는 본주에게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유의 대상으로 파악되는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성상 본주에게 지배당하고 통제당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노비와 노비소유주의 관계는 노비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설정된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노주관계에 대한 연구는 노비의 삶을 형성하고 규정하였던 구체적인 사회관계를 究明하는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奴主關係를 밝히는 일은 노비가

15) 『太祖實錄』卷 14 太祖 7年 6月 18日 壬戌 “刑曹都官上言 凡奴婢價 多不過五升布一百五十四匹馬價則至四五百匹 是重畜輕人於理不順願 自今凡奴婢價 勿論男女年十五以上四十以下者 四百匹 十四以下四十一以上者 三百匹 論定買賣 永爲恒法 其在逃役價 則每一名一朔 五升布 三四 年月雖多 不過其直 上允之”

16) 『世宗實錄』卷 105 世宗 26年 윤7月 24日 辛丑 “傳旨刑曹……況奴婢雖賤 莫非天民也”
김훈식, 「여말선초의 민본사상과 명분론」, 『애산학보』 4, 1986. 60쪽 재인용.

17) 김훈식, 위의 논문, 1986. 56~68쪽 참조.

주인에게 인신적으로 강하게 예속되어 매매, 상속, 증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예적 상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때 고대에서 중세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노비제가 극복되어 가야하는 것으로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중세후기에 들어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줌으로써 한국 중세사회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조선의 건국으로부터 경국대전이 반포 시행되는 성종대까지 약 100년에 이르는 기간을 조선초기로 상정하여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인명범죄의 사례를 통하여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조선초기에 기록된 인명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 시기에 발생한 인명범죄 중에서 노주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밝혀 노비와 주인의 관계가 당시 사회에서 첨예하게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사회적 관계였음을 파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노주관계 아래에서 발생한 인명범죄의 원인을 주인의 노비에 대한 범죄와 노비의 주인에 대한 범죄로 형태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奴主關係의 갈등과 마찰이 왜 발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태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奴主關係 인명범죄의 원인과 양상도 점차 큰 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통하여 奴主關係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人命犯罪에서의 奴主關係의 비중

특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자 하는 가치규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의 범죄는 형식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이며 실질적으로는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 不法일 것을 요하며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정의된다.¹⁸⁾ 그러나 조선시대의 범죄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왕권에 대한 침해와 유교적 가치규범의 위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인 행위 등을 모두 범죄로 규정할 수 있었다.

태조대부터 성종대에 이르는 103년 동안 三覆에 의해 국왕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45명의 사형죄수에 관한 기록을 실록에서 찾아 범죄 실태의 특성을 분석한 정태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발생한 범죄는 대체로 强盜·殺人·竊盜·奸淫·毆打·僞造·燒家·利敵·謀叛·亂言·誣告·不敬·詐稱·私貿易·焚陵 등으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강도가 4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살인범이 29.3%, 절도범이 12.8%로서 강도와 살인·절도가 전체 범죄의 90%를 차지하였다.¹⁹⁾

18) 李在祥, 『刑法總論』, 박영사, 1995, 65~66쪽 참조.

19) 鄭泰憲, 「朝鮮初期 社會犯罪에 관한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8. 23쪽 <表II-1> 인용
<표 1> 王代別 犯罪三覆과 人員現況(태조~성종) (단위:명)

범죄구분 왕대별	强盜	殺人	竊盜	奸淫	毆打	僞造	燒家	利敵	謀叛	亂言	誣告	不敬	詐稱	私貿易	焚陵	計	%	년평균 인원
세종	572	340	103	18	28	8	18	10				2	6		1105	54.0	34.5	
단종		7							2	1					10	0.5	5.0	
세조	2	18			1	2		1	5	2	2	1			34	1.7	2.4	
예종		11			1				6						18	0.9	18.0	
성종	400	224	159	30	11	12	4	7	4	10	8	5	2	1	890	43.5	35.6	

人命 즉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범죄는 그 피해를 전혀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嚴刑으로 다스려야 할 중한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도 역시 인명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규정되어 죽음의 원인과 범인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범죄자에 대한 엄한 형벌이 부과되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 필자가 확인한 인명범죄는 총 908件으로 왕대별로 발생건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 와 같다.

<표 2> 왕대별 인명범죄의 발생건수²⁰⁾

구분 \ 시기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합계
		유형	살인	7	2	19	419	4	8	48	7
	자살			2	8	2	2	3	1	6	24
	구타	2	3	10	50	4	4	20	3	38	134
합계		9	5	31	477	10	14	71	11	280	908
연평균		1.5	2.5	1.7	14.9	5	4.7	5.5	11	11.2	

편의상 왕대별로 분류하여 통계를 내었지만 시기별 인명범죄의 추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심도 깊은 연구를 요하는 부분으로 생각되기에, 여기에서는 다만 기록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計	974	600	262	48	41	22	22	18	17	13	10	8	8	1	1	2,045	100.0	
%	47.6	29.3	12.8	2.3	2.0	1.1	1.1	0.9	0.8	0.6	0.5	0.4	0.4			100.0		

20) 다음의 표를 살펴보기에 앞서 통계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실제 사건의 발생 수와 필자가 정리한 기록상의 발생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실록 자료는 지배층 중심의 기록인 까닭에 주로 국가정책이나 지배층인 양반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피지배층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룬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왕대별로 기록의 편차가 존재하고 편찬과정에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등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위의 표를 보면 태조대부터 태종대까지 사건의 연평균 발생수가 3건을 넘지 않다가 세종대에 이르러 증가를 보여 14.9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 초에 희소하게 발생하던 인명범죄가 세종대에 이르러 갑자기 증가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태조대부터 태종대에 이르는 기간은 건국초기라는 시기적인 배경과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시기였음을 감안할 때 인명사건이 관에 접수되지 않고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 좀 더 높았으리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조선이 건국된 시점부터 성종의 재위 마지막 해인 1494년까지 103년 동안 총 908건의 인명범죄가 기록에 남겨져 있다. 사건의 유형별로 발생수를 살펴보면 살인이 750건, 자살이 24건, 구타가 134건이다. 수치상으로는 살인이 구타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살인이 구타보다 많이 발생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구타보다 살인이 더 높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살인사건은 대부분의 범죄자가 死刑에 처해지는 重罪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死刑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인 국왕에게 보고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어 누락의 정도가 비교적 덜하였다. 그러나 구타의 경우는 인간관계에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타의 범죄에 비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까닭에 관에 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화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관에서 실정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령의 권한 내에서 처벌될 뿐 왕에게 까지 보고될 성격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구타사건은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노비가 주인을 때리는 등의 강상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명범죄는 범행의 대상이 사람인 까닭에 어느 범죄보다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둘 사이의 관계는 인명

범죄의 특성 및 갈등을 야기한 인간관계와 사회 환경을 살피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²¹⁾

〈표 3〉 인명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 피해자	본주	가 족								친·인척	간부	채권자	이웃·지인	관(官)	민(民)	기타	합계	
		노비·비부	부모	처부모	자식	사위	남편	아내	형·누나									동생
본주	76																76	
노비·비부	26																26	
가족	부모				41												41	
	처부모					9											9	
	자식		3														3	
	사위			3													3	
	남편							93			6						99	
	아내						36										36	
	형·누나								9								9	
동생								6								6		
친·인척									26							26		
남편의후처,전처·첩							3									3		
간부							4									4		
채무자											5					5		
이웃·지인												7				7		
관(官)														5		5		
민(民)													55			55		
기타															6	6		
합계	26	76	3	3	41	9	40	96	6	9	26	6	5	7	55	5	6	419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 필자가 확인한 인명범죄 총 908件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범죄는 419件으로

21) 沈載祐, 앞의 논문, 2005, 119쪽 참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통계를 내어 정리한 것이 앞의 <표 3>이다.

인명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전체사건의 46%인 419건으로서 이를 통해 다소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그 주요양상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범죄의 45% 정도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부부 사이의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가 93건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거나 구타한 경우인 36건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난 범죄는 총 44건으로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경우가 3건,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경우가 9건이며 자식이 부모를 때린 경우가 32건이다. 이 밖에도 형제간의 범죄와 사위와 처부모간에도 인명범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또한 친·인척 사이의 범죄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인명범죄가 가족 및 친족 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현대의 범죄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²²⁾ 그 이유는 아마도 관계의 특성상 타인에 비하여 접할 기회가 잦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음에 따라 마찰과 갈등이 생길 여지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타인에 비하여 서로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고 서로 혈연 및 결혼이라는 결속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신 혹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여져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2) 李存杰, 「殺人犯罪의 原因과 對策」, 『法學研究』 5, 韓國法學會, 2000, 324쪽 ; 김진혁, 「殺人犯罪의 特性 및 對應方案」, 『韓國公安行政學會報』 13, 2002, 37쪽 참조.

가족구성원간의 범죄 다음으로 많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노비와 주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명범죄이다. 奴主關係에서 발생하는 인명범죄는 모두 102件으로 이 중에서 노비가 본주를 살해한 사건은 47件, 본주를 구타한 사건은 29件이며 본주가 노비를 살해한 사건은 18件, 노비를 구타한 사건은 8件이다. 수치상으로 볼 때 노비가 주인의 인명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당시 사회에서 노비가 주인을 죽이는 사건은 강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인식되었다. 조선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큰 틀이었던 신분제를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주인을 죽인 노비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死刑을 집행하는 등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인식을 드러내곤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노비가 주인을 죽이는 사건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여타의 살인사건에 비하여 기록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반면 주인이 노비를 죽이는 경우는 거의 사적인 형벌을 가하다 죽인 경우인데 이는 집안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라 관에서 그 실정을 모두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官과 民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官은 곧 국가를 의미한다. 官과 民의 관계에서 인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濫刑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濫刑은 관리가 죄인을 訊問하거나 처벌할 때 규정된 법 이외의 형벌을 가하거나 억울하게 형벌을 가하여서 인명이 상하게 되는 경우이다. 조선시대에는 범죄자를 처벌 할 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더라도 자백이 없을 경우 유죄를 성립시킬 수 없었

다. 즉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불복할 경우 명백한 물증이 있어도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었다. 비록 신장의 규격과 매질하는 신체부위에 관해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는 하였지만²³⁾ 신문하는 관리들이 급하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亂杖을 행하는가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죄수들을 고문하여 受刑者가 죽음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²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도 인명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독촉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이것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이다. 또한 채권자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으로 보낸 奴가 자신의 주인의 권세에 의지하여 사채를 거두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다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시기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신분계급의 상하관계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사채대여는 양반사족으로 대표되는 지배층이 토지를 집적해가는 중요한 방법이었다.²⁵⁾ 채무자인 농민들은 흉년 및 정부의 가혹한 부세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장리 및 사채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궁핍한 형편상 제 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²⁶⁾ 이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즉 양반사족과 농민 사이에 마찰이 빚어져 인명범죄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또한 이웃이나 지인의 관계에서도 인명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웃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3件, 지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4件이다.

23) 『經國大典』卷 5 刑典 推斷 “凡拷訊 訊杖長三尺三寸上一尺三寸則圓徑七分下二尺則廣八分厚二分(用營造尺)以下端打膝下 不至臙肋一次毋過三十度 取旨乃行”

24) 『世宗實錄』卷 84 世宗 21年 2月 辛亥 “議政府啓……或以手執兩耳 緊引致傷 或兩鬢毛髮 裂木挾引 皮浮皆裂 訊杖三十度 猶爲不足 因以杖端 衝其傷處 刻深侵虐者 或有之 請一皆痛禁”

25) 李景植, 『朝鮮前期 土地制度研究Ⅱ -농업경영과 지주제-』, 지식산업사, 1998. 253~269쪽 참조.

26) 『成宗實錄』卷 44 5年 윤6月 更子 “御經筵 講訖……掌令李瓊全啓曰 此則小弊也 當今宰相 務富其家 以長貨利 貸民穀布 而貧不能償 則依勢作威 劫奪土田牛馬侵虐之狀 不可勝言 請宰相之有長利者 一皆禁之 琛又啓曰 非但宰相 僧人有以長利侵民者 清淨寡欲乃僧道也 而多畜財產 以爲民害 不可不禁 允成曰 古云 富者貧之母 如非長利 凶年飢歲 小民無以資活”

그런데 이웃 간에 발생한 범죄가 3件밖에 되지 않는 것은 다소 의외이다. 타 지역과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지 않았고 주요 생활반경이 자신의 고을에 한정되었던 조선 초기 사회의 특성상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이나 같은 고을 사람들과의 마찰로 인한 인명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자료의 한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실록의 기록에는 살인을 저지른 범죄인의 거주지 및 옥에 갇힌 지역만을 알 수 있을 뿐 피해자의 거주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역적인 연관성에 대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고찰은 불가능하다.

그밖에 제자가 스승을 죽인 사건이 2件, 아내가 전남편의 자식을 죽인 사건이 2件, 간통한 여인의 시동생이나 주인을 죽인 경우가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초기에 기록된 인명범죄 가운데 24%가 노비와 주인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당시 인명범죄의 적지 않은 경우가 奴主關係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기록되지 않은 주인의 노비 私刑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에서 노비와 주인의 관계는 상당한 갈등과 마찰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Ⅲ. 奴主關係 人命犯罪의 형태별 원인 분석

2장에서 조선초기에 기록된 인명범죄 가운데 노주관계 아래서의 범죄 발생률은 가족구성원 간의 범죄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그 비중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실록의 사례를 통하여 노비와 주인간의 인명범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원인분석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실록의 기록에 명확한 범죄의 동기가 밝혀진 경우가 30%에 지나지 않아서 전체사건의 구체적인 동기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인에 대한 노비의 범죄의 경우는 기록의 정도가 더욱 소략하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동기가 확인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인의 노비에 대한 범죄

노비는 주인에게 소유되어 지배당하는 존재로서 본주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었다.²⁷⁾ 따라서 노비의 주인이 家長으로서 노비의 잘못을 다스릴 때 사적으로 體刑을 가하는 私刑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가에서도 주인이 자신의 노비에게 私刑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노비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²⁸⁾ 그러나 이 私刑은 주인의 자의에 따라서 일관된 원칙이 없이 집행되어 노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濫殺과 酷刑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27) 『成宗實錄』 卷 23 成宗 3年 10月 丙子 “(司憲府持平金)利貞等更啓曰 遠方奴僕有行不義者 其家長尙且治罪 況家內事乎”

28) 『世宗實錄』 卷 105 世宗 26年 윤7月 辛丑 “傳旨刑曹……奴婢有罪者 其主論罰之法 行之已久 未易遽革也”

있다. 私刑이 酷刑과 濫殺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주인의 분노를 제어하고 통제할 만한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행해진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성종이 “國法에 무릇 한 집안의 주인이 노비에게 罪過가 있으면 스스로 벌하도록 맡겨 둔 것은 그 분수를 중하게 여긴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리석고 사나운 무리가 스스로 벌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도리가 아닌 殘虐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없다.”²⁹⁾ 라고 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물론 국가가 私刑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노비가 살인이나 강도죄 등 국법을 범한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처벌되었다. 즉 국가가 허용하는 私刑의 대상은 노주관계 아래에서 노비가 주인에 대해 저지른 잘못 및 일탈행위를 말한다. 또한 국가는 濫殺과 酷刑과 같은 극단적인 私刑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약을 가하였다.³⁰⁾ 이것은 생살여탈의 권한은 한 사람 곧 왕에게서만 나온다는 당시의 왕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³¹⁾ 즉 국가는 집안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비의 일탈행위 등에 대한 노비 통제 의 의미로 이루어지는 본주의 체벌만을 私刑으로 허용하되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재를 가하였던 것이다.

29) 『成宗實錄』 卷 216 成宗 19年 5月 辛卯 “傳旨刑曹曰……國法凡家主之於奴婢 遇有罪過 任其自罰 重其分也 間有嚚悍之徒 利於自罰 非理殘虐無所不至”

30) 『世宗實錄』 卷 105 世宗 26年 윤7月 24日 辛丑 “傳旨刑曹……稽諸律文 奴婢歐家長條云 若奴婢有罪 其家長及家長之期親若外祖父母 不告官而歐殺者 杖一百 無罪而殺者 杖六十徒一年 當房人口 悉放從良 若違犯教令而依法決罰 邂逅致死及過失殺者 各勿論 則其主擅殺奴婢者 一依律文施行可也……自今奴婢有罪無罪 不告官而歐殺者 一依舊例科斷 如有炮烙劓黥面劓足及或用金刀弓矢 或用大木巨石 一應慘酷濫殺者 其當房人口 非自己奴婢 勿令屬公 若期親及外祖父母歐殺 而當房人口 係殺者之奴婢 則亦令屬公”

31) 『世祖實錄』 卷 37 世祖 11年 11月 丁卯 “卒參判曹孝門妾子晉卿 殺婢于東大門外……生殺予奪 獨出一人 晉卿擅殺其婢 殘暴莫甚”；『成宗實錄』 卷 88 成宗 9年 正月 23日 丙戌 “御經筵 講訖 司諫慶俊啓曰 以棄屍事 許奴婢告其主 君臣奴主 其義一也 若奴婢告家長 則是綱常毀矣……上曰 予非不知綱常之毀 然擅殺人命 是無君也” (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임. 이하 사료에서도 마찬가지로임.)

1) 노비의 도망

노비의 도망은 성종 15년 한명회가 올린 계에서 “지금 공·사노비들이 도망하여 누락되고 몰래 자기 집에 두어 숨도록 한 것이 무려 1백만이 되니, 이는 三韓 때의 한 나라 인구수입니다.”³²⁾ 라고 할 정도로 조선시대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공노비의 도망은 국가재정의 감소를 의미하며 사노비의 도망은 곧 그 주인의 경제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사노비의 경우는 士家의 盛衰를 좌우할 만큼 主家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존재였다.³³⁾

또한 조선시대의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군신관계와 동일시되는 綱常의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도망노비는 주인의 경제력 감소와 아울러 背主한 逆奴로서 주노관계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어 주인에게 용서받지 못할 존재로 인식되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도망노비에게 다시는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노비들 또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도망노비에 대한 주인의 처벌은 그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일상적인 체벌과는 거리가 있는 강도 높은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의 사례는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성종대에 충순위 이형문은 奴 옥산이 배반하고 달아났다 하여 두 귀를 자르고, 오른쪽 볼에 牛賊이라고 刺字하고, 두 무릎과 오금을 불에 태웠으며³⁴⁾ 세종대에 행사직 임가는 그의 奴 백동이 주인을 배반하고

32) 『成宗實錄』 卷 170 成宗 15年 9月 癸丑 “御經筵 講訖 領事韓明澮啓曰……今者公私賤口 逃漏隱接 無慮百萬 此三韓時一國人數也”

33) 『文宗實錄』 卷 7 文宗 1年 5月 丙辰 “議政府據刑曹呈啓……夫奴婢代主之勞 使之如手足 士家之盛衰 實由蒼赤之有無”

34) 『成宗實錄』 卷 74 成宗 7年 12月 戊戌 “義禁府啓 忠順衛李亨門以其奴玉山背逃 割兩耳 刺右腮曰牛賊 熏灼兩膝 膾罪 律該決杖一百 盡奪告身 削仕還屬 命決杖 邊遠充軍 玉山屬公”

役事를 회피하였다 하여, 무수히 구타한 끝에 그 두 귀를 자르고 근육을 끊어내고 머리털을 깎는 등 잔혹한 형벌을 가한 끝에 죽게 하였다.³⁵⁾

주인의 입장에서 노비의 죽음은 경제적인 손실면에서 볼 때 원치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잔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은 도망노비에 대한 주인의 극도의 분노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노비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기도 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노비의 壯勇隊 入屬

노비의 도망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었다면 壯勇隊 入屬은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었다. 세조 5년에 忠武衛 소속으로 설치된 公私賤으로 구성된 壯勇隊는 성종 6년에 양인 병종으로 그 성격이 달라지기 전까지 公私賤 등이 장용대에 입속하여 복무기한을 마치고 從良되는 관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³⁶⁾ 즉 사노비가 장용대에 입속하여 복무기한을 마치게 되면 公處 奴子 중에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본주의 自願에 따라 바꾸어 주고 본인은 役을 면할 수 있었다.³⁷⁾ 주인과 緊縛한 관계에 있었던 당시 사노비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사노비의 장용대 입속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던 까닭에 장용대 입속을 둘러싼 노비와 주인의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리라고 추

35) 『世宗實錄』卷 31 世宗 8年 2月 丙寅 “刑曹啓 行司直林稼 以奴白同背主避役 無數歐打 割其兩耳 斷筋剪髮 殘刑致死 律應杖 一百從之”

36) 李弘斗, 「壯勇隊를 통한 朝鮮時代 賤人의 身分變動 -公私賤 內奴의 身分上昇을 중심으로-」, 『實學思想研究』 8, 1996.

37) 『世祖實錄』卷 17 世祖 5年 9月 丁酉 “兵曹啓……私賤則以公處奴子年歲相準者 聽本主自願換給 己身免役……從之”

정된다. “무릇 장용위는 모두 奴로서 주인을 배반한 것이므로, 심히 옳지 못합니다.”³⁸⁾, “장용대 설치 이후부터 노비가 주인을 배반하기 시작하였습니다.”³⁹⁾와 같은 당시 대신들의 인식을 통해 볼 때 노비의 장용대 입속은 背主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장용대 입속을 통한 奴主간의 구체적인 갈등 사례로서 노비인 富貴가 장용대에 입속하려고 하자 주인 흥계조가 이를 미워하여서 귀를 베고 힘줄을 끊은 경우가 확인된다.⁴⁰⁾ 부귀는 장용대의 입속을 피하였지만 본주는 부귀의 귀를 베고 단근형을 가함으로써 이를 제재하고 있다. 노비의 장용대 입속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노비가 복무기한을 마친 후에 공노비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문제는 노비가 장용대에 입속해서 복무기한을 마치기 전까지의 시간이다. 주인에게는 자신의 노비가 입속한 후 부터 공노비를 지급받기 전까지의 시간동안 노비의 不在로 인한 노동력과 경제력의 공백이 생겨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3) 노비의 發怨言·誣言

노비는 주인에게 소유되어 지배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거나[不禮本主] 태도가 불손한 노비는 치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록에서 본주가 자신에게 불손하다는 이유로 노

38) 『成宗實錄』卷 87 成宗 8年 12月 丙辰 “受常參 視事……(領議政鄭)昌孫曰 凡壯勇衛皆以奴背主 甚不可”

39) 『成宗實錄』卷 33 成宗 4年 8月 癸亥 “先是 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上疏 至是乃下 其疏曰……自設壯勇隊以後 奴始背主”

40) 『世祖實錄』卷 29 世祖 8年 11月 4日 甲午 “有一壯勇隊訴駕前曰 私奴富貴者 欲入壯勇隊 其主洪繼祖疾之割耳斷筋”; 『世祖實錄』卷 29 世祖 8年 11月 29日 己未 “義禁府鞠洪繼祖啓 律應斬待時 命勿待時”

비에게 직접 私刑을 가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던 까닭에 실록의 특성상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 부호군 심한의 아내 이씨의 奴 맹식과 증석이 장용대에 들어간 뒤로 본주에게 禮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杖 1백과 주인에게 돌려주어 役使하게 하는 처벌을 받은 사례는 확인할 수 있다.⁴¹⁾

주인에 대한 태도가 불손한 것과는 별도로 노비가 주인에게 원망의 말을 한 것이 이유가 되어 주인으로부터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참판 조효문의 첩 자식 조진경이 婢子를 동대문 밖에서 죽인 사건이 그것이다. 조진경의 어머니 혼비에게 보로미라는 婢가 있었는데 그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자 주인인 혼비에게 휴가를 청하였지만 혼비가 허락하지 않자 원망하는 말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혼비가 노하여 그 아들에게 보로미를 죽이라고 하자 조진경은 보로미의 자식을 옆에 세워 놓고 ‘내가 네 어미를 죽이는 것을 보라.’ 하고는 奴를 시켜서 다듬이방망이로 그 머리를 치게 하였는데 죽지 않자 친히 활을 쏘았으나 또 죽지 않으므로, 화살을 뽑아 다시 쏘아서 죽였다.⁴²⁾

한편 노비가 주인을 모해하는 말을 했다하여 남살한 경우도 있었다. 행 호군 박윤창의 아내 귀덕은 노비를 원수와 같이 미워하였는데 집에 장대하고 아름다운 奴가 한명 있어 그를 총애하여 부리었다. 이를 두고

41) 『睿宗實錄』 卷 8 睿宗 1年 11月 丁亥 “刑曹啓 行副護軍沈澣妻李氏奴孟植 仲石 入壯勇隊 不禮本主 其母小斤亦然 當得情科罪 然孟植 仲石 拷訊已三次 小斤二次 猶且不服 無他證人 只以家中女奴爲證 曖昧難明 不可遽置重 典但照李氏狀告 孟植 仲石 小斤等唐突 所在處則雖無切迫之言 意必強狠不遜 請依律杖一百還主役使 以正風俗 從之”

42) 『世祖實錄』 卷 37 世祖 11年 11月 丁卯 “卒參判曹孝門妾子晉卿 殺婢子于東大門外 晉卿母欣非 卒敦寧李絞妾女也 爲孝門妾 生晉卿有婢甫老未 其子病死 請暇不得 有怨言 欣非怒謂其子曰 必殺此人 晉卿率奴僕數人 歸東大門外巖穴間 立其子於側 謂曰 看我殺汝母 兒子啼呼 不忍視 令奴夫黃以砧杵擊其首 不死 親自射之 又不死 抽矢復射殺之”

한 婢가 귀덕이 그 奴와 私通했다고 聲言하자 귀덕이 즉시 그 母子를 때려 죽게 하였다.⁴³⁾

본주를 원망하는 말을 하거나 모해를 하여 私刑을 당하는 것은 노비가 비록 재산으로 취급되기는 했지만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표출할 수도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였다는 데 기인한다. 짐작하건대 노비의 대부분은 본주의 가혹한 대우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처지 때문에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고, 위의 보로미의 경우처럼 자식이 병들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와 같이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였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것이다.

4) 奴의 婢妾 간통과 본주의 婢 간통

奴가 주인의 婢妾이나 주인이 가까이 하는 婢와 간통을 한 경우에 주인으로부터 私刑이 가해지고 있었다. 그 사례로 익녕군 이치가 자기가 가까이 하는 婢를 간통한 奴 계동을 割勢한 경우와⁴⁴⁾ 전 판중추원사 오승이 첩으로 삼은 기생 금강아와 간통한 奴의 발바닥을 불로 지지고 杖殺한 사건을 들 수 있다.⁴⁵⁾ 割勢는 곧 宮刑을 말하는 것으로 생식 기능을 잃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宮刑은 그 성격상 死刑보다 더 굴욕적이고 가혹한 형벌이었다.

43) 『世祖實錄』 卷 7 世祖 3年 5月 辛巳 “命義禁府 放行護軍朴允昌 姜貴德……凡僕隸之有小失者 輒加拷掠 因而死者非一 奴婢疾如仇讎 家有一奴稍壯美 貴德寵使之 有一婢聲言與奴私貴德 卽搏殺其母子 事覺見囚”

44) 『世宗實錄』 卷 124 世宗 31年 5月 壬辰 “益寧君 移以其奴桂同奸所私婢割勢 命宗簿寺鞠之”

45) 『世宗實錄』 卷 102 世宗 25年 11月 乙卯 “前判中樞院事吳陞妻亡 以妓錦江兒爲妾 專幹家事 時陞年八十 錦江兒常密與人私 陞老耄不知 又與陞奴奸 陞知之 燻炙奴足心 杖殺之”

한편 본주가 자신의 비를 간통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은 본주가 자신이 간음하고자 하는 婢가 저항하고 도망하자 이를 이유로 私刑을 가하는 경우와 본주와 비의 관계를 女主가 투기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의 사례로는 문산군 유하의 첩의 아들 유효손이 婢 효양을 간통하고자 하였으나 효양이 따르지 않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쇠를 달구어 근육을 지지고 왼쪽 발뒤꿈치를 꿰어 삼끈으로 꿰어 묶는 등 酷刑을 가한 사건을 들 수 있다.⁴⁶⁾ 숯불에 쇠를 달구어 근육을 지지는 형벌인 炮烙刑은 “국가에서도 쓰지 않는 것”이라는 성종의 말에도 나타나 있듯이 끔찍한 극형이었다.

본주와 관계를 맺은 婢에 대한 女主의 私刑은 노비의 잘못에 대한 주인의 징계와 치죄라기 보다는 正妻로서의 반발의 의미와 아울러 대상 婢의 존재 자체에 대한 증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 따라서 그 양상이 잔혹하게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종도 참혹하게 죽은 시체가 발견되자 “참혹하기가 심하다. 이것이 어찌 閭閻의 미천한 백성이 서로 싸우면서 때린 자가 한 짓이겠는가? 틀림없이 巨家の 독살스러운 아낙네가 첩을 妬媚하여 속시원하게 분풀이를 하려는 자의 소행일 것이다.”⁴⁷⁾ 라고 하여 잔인하게 죽인 소행을 미루어 妬忌로 인한 살인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세종대 집현전 응교 권채의 아내 정씨가 권채의 비첩 덕금을 질투하여 머리털을 자르고 똥을 먹이고 항문을 침으로 찌르며 하루 걸러서 밥을 주는 등 여러 달을 가두어 두고 학대하여 거의

46) 『成宗實錄』 卷 216 成宗 19年 5月 辛卯 “文山君 柳河妾子孝孫 以婢孝養屢逃亡 燒鐵火筋 穿左足踝 又以麻繩貫結 孝養三寸叔馬未致 狀告三司”; 『成宗實錄』 卷 218 成宗 19年 7月 己巳; 『成宗實錄』 卷 218 成宗 19年 7月 甲戌; 『成宗實錄』 卷 218 成宗 19年 7月 癸未

47) 『成宗實錄』 卷 216 成宗 19年 5月 乙酉 “傳旨 義禁府 刑曹 漢城府……慘酷甚矣 此豈閭閻小民鬪狠相毆者之所爲 必巨家悍婦妬媚妾媵 甘心快意者之所爲”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비롯하여⁴⁸⁾ 태조대에 진 교서감 왕미의 아내가 그婢를妬忌하여 죽여서 길옆에 버린 사건⁴⁹⁾, 세종대에 좌찬성 이맹균의 아내 이씨가 남편이 가까이한婢를 참혹하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하여 홍제원 길가에서 발견된 사건⁵⁰⁾, 성종대에 참봉 신자치의 아내 숙비가 그 어미 막생과 더불어 질투로 인하여婢 도리의 머리를 깎고 혹형을 가하여 흥인문 밖 산골짜기에 버려둔 사건⁵¹⁾ 등이 확인된다.

특기할만한 점은 죽음에 이르지 않은 덕금을 제외하고는 酷刑으로 치사한 屍身들이 모두 遺棄되었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시신들이 모두 유기되었기에 외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사건이 발각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私刑으로 인하여 노비가 죽음에 이르는 범죄는 발생 장소가 외부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 사족의 집안이었고 가해자 또한 지배층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고 그 집안 내에서 조용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많았다. 이것은 세종이 “私家の 隱密한 곳에서 죄 지은 노비를 그 주인이 어떻게 하나하나 율문을 상고하여 논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법에 의거하였는지 아닌지는 考覈하기가 매우 어렵다.” 라고 한 것과 같이 왕도 인식하고 있는 바였다.⁵²⁾

48) 『世宗實錄』卷 37 世宗 9年 9月 戊子 “義禁府啓 權採柎妾婢德金 家內囚禁及妻鄭氏因妬德金 斷髮喫矢 針刺肛門 越日給食 累朔囚禁侵虐 飢困瀕死 照律採杖八十 鄭氏杖九十 命採收職牒 外方付處 鄭氏贖杖”

49) 『太祖實錄』卷 12 太祖 6年 7月 甲戌 “前校書監王亶奸其婢 其妻妬殺之 棄諸道傍 刑曹請罪 亶率妻逃 上命收職牒”

50) 『世宗實錄』卷 89 世宗 22年 6月 庚辰 “左贊成李孟昉啓 家婢有罪臣妻 使奴杖之 仍斷其髮 至五月十三日乃死 臣卽令蒼頭數人埋之奴輩還曰 已理矣 臣以爲信然 今聞洪濟院路邊有死女 三司推覈 臣疑之問諸其奴 奴對以置諸洪濟院路旁 然後臣始知死者乃臣家婢也 不意前日蒼頭 給我也 臣不勝驚懼 敢以聞 上曰 予已知悉 孟昉嘗私其婢 妻李氏 因妬杖之 極其慘酷 遂死”； 『世宗實錄』卷 89 世宗 22年 6月 丁亥； 『世宗實錄』卷 89 世宗 22年 6月 己丑

51) 『成宗實錄』卷 48 成宗 5年 10月 壬辰 “司憲府據東部牒啓 北部參奉慎自治妻李氏與其母李氏 妬自治所奸婢道里 斷髮拷掠 又燒鐵以烙胸膛 陰門 身無完肌 置諸興仁門外山谷間 殘忍莫甚 李氏母女請致鞫之 命義禁府囚鞫”； 『成宗實錄』卷 49 成宗 5年 11月 壬子

52) 『世宗實錄』卷 105 世宗 26年 閏7月 辛丑 “傳旨刑曹……況於私家隱密之處 有罪奴婢 其主安能一一按律論罪乎 其依法與否 考覈甚難”

酷刑과 濫殺과 같은 극단적인 私刑이 이와 같이 발각되지 않고 자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적으로 노비가 본주를 고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국대전』은 자손이나 처첩, 노비가 부모 혹은 가장을 고소할 경우 謀叛·謀逆·謀反을 제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奴妻·婢夫가 가장을 고소한 경우에도 이유에 관계없이 杖一百 流三千里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⁵³⁾ 이것은 주인과 노비의 관계가 綱常의 차원에서 군신·부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노비가 본주를 告官할 경우 도리어 자신이 絞刑에 처해지게 되므로 본주가 同類의 노비를 죽여도 그것을 호소할 길이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私刑으로 인하여 노비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발각될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그런만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도 높았던 것이다.⁵⁴⁾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남살과 흑형이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왕도 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족의 집안일은 切隣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알고 있는 것은 노비일 뿐이다.”⁵⁵⁾, “이 일(노비를 포악하게 대우하는 일)은 주인을 고발하는 데 관계되므로 늘 발각되지 않는 것을 괴롭게 여긴 터이다. 다행스럽게 한 번 발각된 것을 만약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모질고 사나운 자들을 징계할 수 없어서 앞으로 사람을 제멋대로 죽이는 데에 이를 것이다.”⁵⁶⁾ 라고 한 성종의 말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다. 즉 성종은 私家에서 일어나고 있는 흑형과 남살을

53) 『經國大典』 卷 5, 刑典, 告尊長 “子孫妻妾奴婢告父母家長 陰謀叛逆反絞 奴妻婢夫 告家長者 杖一百流三千里”

54) 池承鍾, 앞의 책, 1995, 328쪽 참조.

55) 『成宗實錄』 卷 217 成宗 19年 6月 癸丑 “傳曰……士族家中事 非切隣所得知也 相知者奴婢耳”

56) 『成宗實錄』 卷 216 成宗 19年 5月 辛卯 “傳旨刑曹曰……此事係干告主 常苦於不發覺 幸一發覺 若不痛繩以法 則暴戾者無所懲 將至於擅殺人命矣”

발각하여 처벌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고심하였고 따라서 한번 발각된 것을 一罰百戒 삼아서 엄하게 다스리고자 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이상에서 노의 비첩 간통과 본주의 비 간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범죄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奴가 주인의 비첩을 간통하는 것은 그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반하여 婢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주의 성적 침탈에 의해 性を 강요당함으로 인하여 본주 자신이나 女主로부터 私刑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범죄의 은폐를 위해

사노비 특히 술거노비와 주인은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수시로 접촉이 가능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노비는 이웃이나 친척 그 누구보다도 주인의 동향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다. 즉 노비는 그 주인이 범법행위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최측근에 존재한 사람이었다. 이에 주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노비를 죽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음의 사례는 그러한 경우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추원 부사 구성우의 처 유씨는 구성우가 죽자 명복을 비는 것을 핑계 삼아 승가사에 가서 중 신생과 私通하여, 신생이 때 없이 왕래하였다. 이에 구성우의 奴인 소고미와 婢인 영생 등이 엿보다가 신생을 잡으려고 하자 유씨가 신생과 공모하여 두 사람을 살해하였다.⁵⁷⁾ 유씨는 자신의 간통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노비를 죽였던 것

57) 『定宗實錄』卷 1 定宗 1年 3月 壬申 “誅故中樞院副使具成祐妻柳氏 柳氏初適金益達 益達娶之三日而去 後適成祐 成祐無後卒 柳氏聲言追福 如僧伽寺 私於僧信生 信生無時往來 成祐奴小古未 婢英生等 欲伺執之 柳氏與信生謀 反殺二人”

이다.

2. 노비의 주인에 대한 범죄

조선초기는 후기에 비하여 노비층의 저항이 광범위하고 극심하게 전개된 시기는 아니었다.⁵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의 도망과 殺主 및 毆主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노비가 주인을 죽이거나 구타하는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인 만큼 극단적이고 절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1) 본주의 신체적 침탈

살피본대로 노비에 대한 본주의 私刑은 본주의 임의대로 잔혹한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 노비들이 私刑에 대해 항거하거나 주인에게 반발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다. 본주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비가 취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본주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었다.

장천군에 사는 이승평이 상언하기를, “저의 아들 이현의 아내 유씨가 성품이 악해서 제 손으로 노비를 결박하고 몸소 구타하니, 노비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간 자가 7명이나 됩니다. 신이 홀아비로서 혼자 살고 있는데 신의 노비도 또한 구타를 당하여 도망간 자가 많습니다……” 고 하였다.⁵⁹⁾

58) 조선후기의 노비의 저항에 대해서는 鄭奭鍾, 『朝鮮後期 社會變動研究』, 일조각, 1983, 全炯澤, 「조선후기 私奴婢의 推刷」, 『全南史學』 6, 1992, 全炯澤, 「노비의 저항과 해방」 『역사비평』 1996년 가을호, 1996, 申東根·金容晚, 「朝鮮時代 兩亂期 奴婢層의 存在形態」, 『嶺南專門大學 論文集』 21, 1992. 참조.

59) 『世祖實錄』 卷 7 世祖 3年 3月 己丑 “長川君 李昇平上言 子憲妻柳氏性惡 手縛奴婢 親自毆打 奴婢不勝其苦 而逃者七人 臣以鰥夫獨居 臣之奴婢 亦被毆打而逃者多”

위 사료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주로부터 도망함으로써 본주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인의 폭력에 항거한 사례로는 청풍의 죄수인 사노 잉질동이 그 상전 이명손이 구타하려고 하자 활을 쏘면서 항거한 사건을 들 수 있다.⁶⁰⁾ 한편 본인에게 가해지는 주인의 私刑에 항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및 형제가 본주의 私刑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심지어 죽게 될 경우 본주에 대한 깊은 원한으로 殺主를 감행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사례로 10살밖에 안된 변송이 그 아버지가 주인에게 침학당한 것을 이유로 주인을 칼로 찌르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들 수 있다.⁶¹⁾ 사료에서 ‘侵’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주인으로부터 신체적인 침탈을 당한 것인지 경제적인 침탈을 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나이가 10살밖에 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가 주인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는 등의 절박한 상황에서 깊은 원망으로 인한 복수의 표출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⁶²⁾ 노비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본주를 관에 고하거나 외부에 알릴 수 조차 없었고 전과 다름없이 본주의 소유 하에 있어야 했으므로 그 원한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60) 『成宗實錄』卷 187 成宗 17年 1月 癸亥 “刑曹三覆啓 淸風囚私奴苐叱同 當其主李命孫 欲毆時發矢抗拒罪 律該斬不待時 從之”

61) 『世宗實錄』卷 116 世宗 29年 6月 戊子 “密陽人卞松年才十歲 以刀刺其主未果 以父奴爲主所侵故也 命拿來囚義禁府鞠之”

62) 이밖에도 본고의 대상 시기는 아니지만 명종대에 그 아버지를 杖으로 때려 거의 죽게 한 본주를 죽인 사건도 있다. 私奴 김의는 온양에 사는 김숙겸의 종이다. 김숙겸이 그 아버지를 杖으로 때려 거의 죽게 되었다가 소생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원한을 품고 적당과 공모하여 김숙겸을 죽였다. 『明宗實錄』卷 26 明宗 15年 4月 丙辰 “私奴金義伏誅【金義溫陽居金叔謙之奴 叔謙嘗杖其父 幾死而蘇 因懷怨恨 遂與賊黨 同謀弑叔謙 叔謙之子鑛 呈狀 于本道監司 監司及監推守令等 不爲明辨放之 鑛於駕前陳訴 上命三省交坐 拿鞠得情 遂凌遲處死】”

2) 본주의 性的 침탈

주인의 婢에 대한 성적 침탈은 조선시대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 비는 신체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인의 성적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한 婢의 저항 사례로 이숙번의 婢 소비가 본 주인이 간통하려는 것을 꺼려서 칼날로 이마를 찔러 상하게 한 사건을 들 수 있다.⁶³⁾

본주의 婢 강간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물리적인 힘의 행사라는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상전의 婢에 대한 신분적 지위 및 사회적 힘에 의한 강제라는 성격을 지닌다. 본주의 자기 婢에 대한 강간은 피해자인 婢 자신도 적극적으로 관에 고발하거나 주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婢는 그 신분과 처지상 본주의 강간에 노출되기 쉬운 존재였다. 더욱이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婢에 대한 간통은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명률직해』의 良賤相奸 條를 보면 “良人奸他人婢者 減一等”⁶⁴⁾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他人의 婢라고 하여 그 대상에 자신의 婢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본주의 강제 속에 性を 강요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비단 婢 본인에게만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다. 즉 婢가 결혼한 사람이었을 경우 婢의 남편과 본주 사이에도 갈등관계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상도 성주에 사는 도자해가 자기의 婢인 녹장을 간통하였는데 녹장의 남편인 양원길이 이를 미워하여 칼로 도자해를 죽인 사건이 그것으로⁶⁵⁾ 婢夫가 자신의 아내를 간통한 아내의 본주를

63) 『世宗實錄』 卷 61 世宗 15年 9月 丙申 “刑曹條陳疑罪曰……咸陽囚 李叔蕃 婢小非年十五 憚本主私焉 以刃落本主頭頂而傷”

64) 『大明律直解』 卷 25 刑律 犯奸 良賤相奸 “凡奴奸良人婦女者 加犯奸罪一等 良人奸他人婢者 減一等 奴婢相奸者 以犯奸論”

죽인 경우이다.

3) 본주의 경제적 侵奪

조선시대에는 아주 드물게 부유한 노비가 존재하였다. 이들의 재산 획득은 대개 평소 근검절약을 통해 축적한 결과였으며 토지의 매득, 부모로부터의 상속, 소규모의 개간, 본주로부터의 下賜 등이 재산을 증식하는 주요한 방법이었고, 放役 등의 조치로 말미암아 간접적인 재산증식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었다.⁶⁶⁾ 그러나 대부분의 노비의 재산획득은 여건상 매우 어려워 대개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였다. 그 영세한 재산마저도 신공 등의 부담과 곤궁한 생활로 말미암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방매해야 하는 등 획득한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매우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노비의 재산유지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문제는 본주의 통제에 있었다.⁶⁷⁾ 노비의 소유지는 상전에게 손쉬운 침탈대상으로 인식되어 신분적인 상하관계가 노비의 재산소유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주의 재산침탈을 둘러싼 노비와 본주의 갈등과 마찰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주의 재산침탈과 관련하여 노비의 물리적인 저항이 발생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함종의 죄수 사노 대평은 본 주인 이거물이 田地와 말을 빼

65) 『世宗實錄』卷 23 世宗 6年 3月 丁亥 “慶尙道 星州住都自諧通於自己婢祿莊 其夫梁元吉惡之一日磨劍 妻問 何爲 答曰 將殺汝奸夫妻驚恐曰 是何言也 答云 雖云殺之 豈易爲哉 其後又磨劍 妻又問之 答曰 將殺汝主 妻亦沮之 答曰 如是則并汝殺之 妻曰 然則任意爲之 是日夜 元吉劍殺自諧而逃 後追捕被囚 因杖而死 刑曹將祿莊罪 以謀殺祖父母 父母律當之 命杖一百”

66) 『成宗實錄』卷 181 成宗 16年 7月 壬申 “傳曰 鎭川居私奴林福 今爲賑民 納粟二千碩 其心可嘉” ; 『成宗實錄』卷 182 成宗 16年 8月 戊申 “戶曹啓 全羅道 南平居私奴家同 納粟二千碩 請從願論賞”

67) 조선시대 사노비의 재산소유에 관해서는 金容晚, 앞의 책, 1997 에 상세하다.

앗은 것을 원망하여 늘 헐뜯고 손상시키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거물이 그 아들이산행과 함께 대평의 집을 지나가자 대평이 바라보고는 그 사위인 종 덕지와 함께 각각 몽둥이를 쥐고 말을 타고 뒤쫓아가서 이거물의 어깨와 등을 치니, 이거물이 달아나 진흙 속에 들어갔다가 박존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고 하였다.⁶⁸⁾

주인이 전지와 말을 빼앗은 것을 원망하던 私奴가 사위와 함께 본주를 구타한 사건으로 본주의 침탈에 대해 평소 원한을 품고 있다가 본주가 그 집을 지나가게 되자 실행에 옮긴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노비들의 경제적인 기반은 열악한 것이었고 여기에 본주의 침탈까지 더해진다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궁핍하였을지는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비는 본주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밖에 없었고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본주를 해치는 폭력적인 방향으로 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추쇄에 저항하기 위해

공·사노비의 도망은 국가재정과 主家の 경제에 큰 손실이 예상되는 일이었으므로 이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노비추쇄가 뒤따랐다. 특히 사노비의 추쇄는 원칙적으로 노비주가 담당해야 했으므로 이 과정에서 노비와 주인간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재산을 복구시켜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하고자 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쇄에 나섰을 것이다. 그리고 노비의 도망은 주인의 과도한 형벌과 신공 요구 등의 절박한 사정에 기인했으리라는 점을

68) 『世祖實錄』 卷 39 世祖 12年 8月 戊辰 “刑曹啓 咸從囚私奴大平 怨本主李巨勿奪田與馬 常欲中傷 一日 巨勿與其子李山行過大平家 大平望見 與其婿奴德只 各操白棒 騎馬追逐 杖巨勿肩背 巨勿走入泥中 投匿朴存家”

미루어 볼 때, 도망노비가 본주에게 되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같은 처지에 처해질 것이고 아울러 혹독한 私刑을 받을 것이 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노비가 추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도망노비의 저항의 강도는 붙잡으려는 주인의 팔을 뿌리치거나 돌을 던지는 등 주인에게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인 것에서부터 칼로 찌르는 등 적극적으로 주인을 공격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호장 강은의 奴 대문이 도망한지 3년이 되었는데 은이 대문을 찾아서 붙잡으려고 하자 돌을 은에게 던져서 저항하고 다시 도망한 사건과⁶⁹⁾ 강마의 奴 동량이 주인을 배반하고 남에게 투탁하였는데 강마가 길에서 동량을 만나 끌고 가려 하자 팔을 휘두르다가 강마의 이를 부러뜨린 사건을 들 수 있다.⁷⁰⁾ 도망노비가 본주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대개의 경우였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한편 대문의 사례에서 보듯이 본주가 도망노비를 3년이 지난 후까지 끈질기게 노비추쇄를 진행할만큼 본주에게 노비는 중요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태종 또한 “사노는 그 주인이 추쇄하기를 매우 밝게 한다”⁷¹⁾ 라 하여 사노 추쇄에 대한 本主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후자에 대한 사례로서 보다 적극적인 저항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노 동삼과 두함 등은 그 주인 조수홍을 배반하고 도피하였는데, 조수홍이 근포하자, 동삼 등이 族類를 이끌고 가서 白捧을 가지고 결박하여 때렸다.⁷²⁾ 여기에서 族類는 함께 도망한 조수홍의 노비들을 비롯한

69) 『世宗實錄』 卷 61 世宗 15年 9月 丙申 “刑曹條陳疑罪曰 晉州囚戶長姜隱奴大文 逃出已三年 隱尋大文欲捕之 大文以石投隱 拒而逃之”

70) 『世宗實錄』 卷 50 世宗 12年 12月 丁卯 “刑曹啓 全州人姜磨奴同良 背主投於人 姜磨訟于官道 見同良捧之 同良攘臂觸折姜磨齒”

71) 『太宗實錄』 卷 26 太宗 13年 7月 戊戌 “上曰……私奴則其主推之甚明”

그 처지가 비슷한 도망노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친외는 그 주인인 김종혁이 친외의 집에 가서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몽둥이로 때리자 빠져나가기 위해 찢던 칼을 빼서 종혁의 손가락과 이마와 뺨을 찢어서 피가 나게 하고, 또 옷과 소매를 다섯 군데나 찢었다.⁷³⁾ 이밖에도 성종대의 영경연사 윤필상이 성종에게 전라도의 풍속이 야박함을 아뢰면서 한 말에 따르면 세조 때에 어떤 朝官이 도망간 노비를 잡고자 하여 강진으로 갔었는데, 그 노비들이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다가 마침내 그 주인을 결박하여 매를 때리면서 賤籍을 내어놓으라고 재촉하였고, 심지어는 그 발가락까지 뽑아내었으며, 데리고 간 일행을 모두 결박한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⁷⁴⁾ 전라도의 풍속이 강박함을 드러내기 위한 다소 과장된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추쇄하러 간 본주에 대한 도망노비의 저항이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강달이 본 주인을 배반하고 연창군의 집에 투탁하고 본 주인의 머리카락을 부여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발로 밟고 옆구리와 다리를 집어 차면서 욕하기를, “개자식아, 내가 지금도 너의 종이냐.”고 한 사례도 있다.⁷⁵⁾ 추정하건대 강달의 본주는 家勢가 미약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강달은 勢家人 연창군에게 투탁하여 그의 세력을 믿고 본주를 능욕하고 본주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세가 미약하거나 한미한 본주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노비

72) 『世祖實錄』卷 3 世祖 2年 4月 戊午 “刑曹啓 私奴同三豆含等 背其主曹遂洪逃避 遂洪根捕 同三等引族類 持白棒 縛而擊之 其謀殺情跡明著”

73) 『世宗實錄』卷 61 世宗 15年 9月 丙申 “先是 刑曹條陳疑罪曰……典獄囚天外 其主金從革到 天外戶 扶執頭髮而杖之 天外欲脫而走 拔佩刀刺從革手指及額腮 傷破出血 亦裂衣袖五處”

74) 『成宗實錄』卷 211 成宗 19年 1月 壬戌 “御經筵 講訖 領事尹弼商啓曰……全羅風俗 素稱薄惡 世祖朝 有一朝官 欲捕逃奴婢 往康津其奴等設宴饋之 遂縛其主杖之 督出賤籍 至拔其足指 盡縛帶行奴子二人 逃脫奔告于官 卽捕得之 事聞 凌遲處死 此等惡風 不可不痛繩也”

75) 『世宗實錄』卷 61 世宗 15年 9月 丙申 “刑曹條陳疑罪曰……善山囚姜達背本主 投于延昌君之第 扶執本主頭髮 使之仆地 踏頭髮就 腴脚罵曰 狗子 吾今亦爲汝奴乎”

추쇄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노비를 찾는다고 해도 이처럼 노비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다음의 사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주인으로서 미열(微劣)한 자는 많지 못한 노비가 도망해 숨어 버려서 남은 것이 없어 친히 일을 하는데 이르니 아프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종적을 찾아 잡는 자가 있으면 무리를 이루어 찾아와서 도리어 능욕을 가하니, 풍속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고 하였다.⁷⁶⁾

조선초기는 노비가 도망하여도 자립적으로 살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강달의 예처럼 도망노비는 주로 세력 있는 가문에 투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군기주부 신숙화의 家奴 득남이 본 주인을 도피하여 양녕 대군에게 가서 투탁해 있으면서, 전 교도 김처의 가노 윤귀를 꺾어 또한 양녕에게 가서 투탁하게 하고, 도리어 본 주인 김처를 꺾박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사환노비를 거짓으로 양녕 집의 도망한 노비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빼앗게 합니다. 윤귀는 득남의 연줄을 타고 양녕에게 가서 투탁하여 본 주인을 구타하였습니다. 원컨대, 영락 16년 6월 13일 수교에 의하여 모두 크게 징벌하여 뒷 사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득남은 다른 죄인에게 형벌을 행할 때에 다시 아뢰게 하고, 윤귀는 한 등을 감형하도록 명하였다.⁷⁷⁾

76) 『文宗實錄』卷 6 文宗 1年 3月 癸亥 “議政府據刑曹呈啓……本主之微劣者 則不多奴婢 逃隱無遺 以至親自役事 不勝痛憫脫 有尋縱捕獲者 成群推捕 反加凌辱 敗傷風俗 莫此爲甚”

77) 『世宗實錄』卷 21 世宗 5年 9月 更子 “司憲府啓 軍器注簿 辛叔和 家奴得南 逃避本主 投托於讓寧大君 誘前教導金處家奴允貴 亦使投托讓寧 反逼本主金處 又將他人使喚奴婢 妄稱讓寧家逃奴婢 恣行據奪 允貴資緣得南 投托讓寧 歐傷本主 乞依永樂十六年六月十三日受教 竝大

득남은 자신이 양녕대군에게 투탁해 있으면서 김처의 家奴인 윤귀 또한 피어 양녕대군에게 투탁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처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사료에서 또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비를 거짓으로 양녕대군의 도피한 노비라고 하여 빼앗게 하였다는 점이다. 도망노비를 사칭하여 자신의 노비로 삼는 것은 투탁한 양인을 자기 소유의 노비로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奴를 자신의 도망노비로 사칭하여 빼앗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왕의 형이라는 양녕대군의 세력이 그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신공납부를 거부하기 위해

노비소유주의 입장에서 노비 소유의 가장 큰 의의는 家內使喚 및 主家の 농업경영 그리고 신공의 收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는 신공을 납부함으로써 신역의 부담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신공은 노비주에 대한 경제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공을 납부하는 일은 노비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는 있었겠지만 결코 그 부담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노비소유주가 외거노비의 신공을 수취할 때에는 자신의 솔거노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밖에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외거노비들이 신공을 수합하여 주인에게 납부한 경우도 있으며 주인이 직접 수취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사례는 주인이 직접 수취에 나섰다가 신공납부를 거부하는 노비에 의해 구타를 당한 사례이다.

懲鑑後 命得男他罪人行刑時更啓 允貴減一等”

장령 김제신이 아뢰기를, “함양 사람에게는 장흥부에 살면서 사역한지 이미 오래인 노비가 있었다. 신공을 거두고자 그 아들을 데리고 가니, 노비가 나와 보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나의 주인이라고 하느냐?’ 하였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함부로 너의 주인이라고 일컫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종이 몰래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함께 구타하여 그 팔을 부러뜨리니 아들이 몰래 관에 고하여 즉시 吏卒을 발하여 잡게 하였으나, 겨우 2, 3인만 체포하였습니다……” 고 하였다.⁷⁸⁾

위의 글로 미루어 볼 때 함양사람인 本主는 함양과 장흥부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수취에 나선 것 그리고 奴를 대동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간 것으로 보아 가세가 미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노비는 신공을 거두러 간 本主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이웃사람들을 부추겨 함께 그를 구타하여 팔을 부러뜨리는 등 본주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사실 위와 같은 사례는 신공을 거두어 들일 때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소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겠으나 신공을 수납할 때 노비의 저항이 존재했고 따라서 노비와 본주의 마찰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6) 변방입거를 피하기 위해

조선이 건국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북방개척은 태조대부터 세종 말년에 이르는 약 60년 사이에 압록강 상류유역에는 4郡이, 두만강 하류유역에는 6鎮이 설치됨으로써 그 대략적인 결실을 보게 되었다. 북방사민은 이와 같은 국경의 확정에 따른 변경을 방어하고 북방 경영을

78) 『成宗實錄』 卷 85 成宗 8年 10月 壬戌 “掌令金梯臣啓曰……咸陽人有奴婢居長興府 役之已久 欲收貢 率其子而往 奴婢出見佯曰 汝吾所不知 何謂我主也 隣里人咸曰 彼何人而妄稱汝主耶? 奴潛囑隣里人 共毆之 折其臂 子潛告于官 卽發吏捕之 僅捕二三人”

피하기 위하여 실시된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세종 이후 성종 때까지 북방으로 이주된 하삼도의 民戶數는 3,733호에 달하였다고 한다.⁷⁹⁾ 그러나 실제로 이주되어 가는 입거인의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친척·이웃들과 떨어져서 낯선 땅으로 강제로 이주되어 간다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더구나 주인이 변방입거에 抄定되어 가게 될 경우 노비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주인을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변방입거를 둘러싼 奴主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주인이 변방에 입거될 경우 노비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저항중의 하나가 바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의 도망이었던 것 같다. 사실 변방입거는 입거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도 아들을 죽여 丁數를 줄이거나⁸⁰⁾ 자살을 하거나⁸¹⁾ 도망을 가는 등⁸²⁾의 반발을 통해 기피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만 큼 노비의 입장에서든 또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도망이라는 소극적인 저항을 통해 주인을 따라 변방입거 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저항을 통해 변방입거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풍의 죄수인 사비 소비가 그 주인 김찬이 장차 변경으로 옮기려고 하자, 따라 가는 것을 꺼려하여 김찬을 해칠 것을 꾀하여, 독약을 먹인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⁸³⁾ 주인을 죽여서라도 입거를

79) 李相協, 『朝鮮前期 北方徙民 研究』, 경인문화사, 2001 참조.

80) 『成宗實錄』卷 163 成宗 15年 2月 丙子 “忠淸道 洪州正兵李守生 欲減家丁口數以免徙邊 謀殺其子界文 伺界文澆溺 以木杖打虛脅五六度 界文猶不死 又以木杖衝刺喉間 事覺 守生決杖一百 全家永屬平安道極邊邑奴婢 界文給付 其母 界文母 守生曾出之 故免定屬”

81) 『世宗實錄』卷 84 世宗 21年 2月 癸亥 “全羅道觀察使移牒兵曹曰 玉果縣戶長趙豆彥以咸吉道 鄉戶入居 憚於遠徙 自經而死”；『世宗實錄』卷 95 世宗 24年 1月 乙丑 “議政府啓 茂珍郡人 孫敏憚於入居 縊死 請以長子春敬代送 從之”；『成宗實錄』卷 166 成宗 15年 5月 戊子 “兵曹啓 慶尙道 高靈縣居學生 朴允澄憚入居 縊死……若以戶首身死 一戶人丁並不入送 則效之者必多 勢將難禁 上項自縊者 戶勿論丁準 竝入送 從之”

82) 『世祖實錄』卷 24 世祖 7年 4月 己亥 “兵曹啓 徙居者或中路而逃 或已至其所而逃 不畏邦憲 逃亡相繼 不可不懲 請自今逃散者 依棄毀制書律論 從之”

83) 『成宗實錄』卷 242 成宗 21年 7月 丁丑 “左副承旨許琛 將刑曹三覆啓本啓 淸風囚私婢小非

피하고 싶었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당시 입거인의 고통과 아울러 主家의 이동에 따라 거주지역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받고 있었던 술거노비의 처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겠다.

7) 범죄의 은폐를 위해

주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노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듯이 노비 또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인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사노 덕진은 그 주인 손중지의 同母妹인 신비를 간통하고, 신비와 공모하여 손중지를 죽였다.⁸⁴⁾ 자신의 간통 사실이 본주에게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여 주인을 죽인 것이다. 奴가 家長의 친속과 간통할 경우는 노비와의 간통이나 양인과 노비와의 간통과 비교해 볼 때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덕진은 주인의 동모매를 간통했으므로 만약 발각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가장의 期親과의 간통에 해당되어 교형에 처해졌을 것이다.⁸⁵⁾ 이처럼 자신의 범죄 사실이 주인으로부터 발각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따를 것이 당연하였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 殺主를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노비와 주인간의 인명범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인의 노비에 대한 인명범죄는 자의적인 私刑 즉 濫殺과 酷刑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원인은 노비의 도망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노비의 도망은 주인의 노비소유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하는 일

以其主金贊將徙邊 憚於隨行 謀害贊 採毒藥以食罪 律該斬不待時 從之”

84) 『世祖實錄』 卷 12 世祖 4年 3月 丁酉 “刑曹啓 全羅道 長與人私奴德進奸其主孫仲之同母 妹 信非 與信非共謀殺仲之 律當凌遲處死不待時 從之”

85) 『大明律直解』 卷 25 刑律 犯奸 奴及雇工人姦家長妻 “凡奴及雇工人 姦家長妻女者各斬 ○ 若 奸家長之期親 若期親之妻者絞 婦女減一等 若奸家長之總麻以上親及總麻以上親之妻者 各杖 一百流三千里 强者斬 妾各減一等 强者亦斬”

로서 이 시기에 노비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를 감안해 볼 때 주인에게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런만큼 도망노비에 대한 주인의 극도의 분노가 존재했을 것이고 私刑의 성격상 주인의 이러한 분노를 제어하고 통제할 만한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의 임의대로 酷刑이 가해진 결과 이성적으로는 私刑으로 인하여 노비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비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편 노비의 주인에 대한 인명범죄는 그 주요 원인이 주인의 신체적 침탈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주인의 자의적인 私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자신의 가족이 주인의 私刑으로 인하여 죽거나 다치게 될 경우 주인에 대한 복수심이 극도에 달하게 되어 殺主나 毆主로 표출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노비와 주인간의 인명범죄가 발생한 주요원인은 노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노비소유주와 주인의 이와 같은 통제의 강화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노비 사이에 발생한 극단적인 갈등과 마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IV. 人命犯罪를 통해 본 奴主關係의 변화

3장에서 주인의 노비 濫殺 및 酷刑 그리고 노비의 殺主 및 毆主 등 奴主關係에서 발생하는 인명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시간적인 흐름에 주목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奴主關係 인명범죄의 원인과 양상도 점차 큰 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통하여 奴主關係의 추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인명범죄의 발생 원인이 어떤 경향을 띠며 변화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奴主關係에서 발생한 인명범죄의 원인이 기록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3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시기별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다소 논지의 전개에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주인의 노비 濫殺 및 酷刑이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노비의 도망에 있었다. 노비의 존재가 主家の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인의 노비 私刑이 노비의 도망을 막고 노비의 잘못에 대한 치죄를 하는 등 노비의 효율적인 소유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만큼 시기에 따라 별 다른 변화 없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 같다.

한편 노비의 殺主 및 毆主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주인의 침탈 그 중에서도 신체적인 침탈에 있었다. 즉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측면 혹은 자신의 가족을 해한 복수의 측면이 殺主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세조대 이후로 자신의 범죄 은폐와 주인의 신공수취 거부 및 변방에 입거하는 주인을 따라 가는 것을 꺼려하여 殺主를 감행하는 등의 원인이 새롭게 등장하는 변화가 눈에 띈다. 즉 자신의 처지를 바꾸거나 자신이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주

인을 죽이는 사건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殺主가 발생하는 원인의 축이 본인 및 가족에게 酷刑을 가하는 등의 주인의 가혹한 행위에 대한 저항 및 복수로 인한 것에서 즉 주인의 행위에 의한 결과 및 반응으로서의 殺主에서 차츰 노비의 주체적인 의사가 반영된 자신의 처지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시도로서의 殺主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奴主關係 인명범죄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인의 노비 남살 및 폭형의 양상은 시기별 추이에서 별다르게 주목되는 바가 없어 殺主의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표 4> 는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 필자가 확인한 殺主와 毆主 사건을 각 왕대별로 통계를 낸 자료이다.

<표 4> 殺主 및 毆主의 시기별 추이

구분	왕대별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1392~ 1398	1399~ 1400	1401~ 1418	1419~ 1450	1451~ 1452	1453~ 1455	1455~ 1468	1469	1470~ 1494
殺主	단독범행			1	13					5
	공모			1	7			3	1	16
毆主	단독범행				12			1		10
	공모				2			1		3
합계				2	34			5	1	34

주지하듯이 실록은 기본적으로 국왕의 활동이나 국가정책 및 지배층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피지배층에 대한 기록은 소홀하게 다룬 측면이 있다. 또한 왕의 재위기간도 각각 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록의 편차 역시 존재한다. 위의 표를 보면 태조와 정종대 그리고 문종과 단종대는

殺主 및 毆主가 한건도 발견되지 않으며 태종대와 예종대에도 사건수가 희소하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다는 기록의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태조와 정종, 태종대는 왕자의 난 등 건국이후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의 전개로 말미암아 정치적 여건상 실록의 기록이 충실할 수 없었다. 문종과 단종 그리고 예종대는 재위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사건이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조대 또한 재위기간에 비하여 사건의 발생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조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민수의 옥사가 일어나는 등 진통을 겪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실록의 기록 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비교적 殺主와 毆主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세종대와 성종대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

우선 세종대와 성종대에 발생한 毆主 사건을 보면 殺主와 비교해 볼 때 더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비가 주인을 구타하는 행위는 殺主에 버금가는 강한 저항의 형태이기는 했지만 극단적인 저항의 형태인 殺主 보다는 실제 발생수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희소한 것은 본주가 자신의 노비에게 구타당했을 경우 관에 고발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던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시기 노비소유자는 양반들이 대다수 였으므로 자신의 노비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개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은밀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殺主의 경우는 용서될 수 없는 강상죄로 인식되어 능지처사에 해당하는 중대한 옥사로서 왕에게 보고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종대 殺主의 경우 70% 이상이 공모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세종대 노비들이 殺主를 공모한 사건이 35%를 차지하는 것에 비교해 보아도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모의한 사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종대는 婢가 그 남편과 공모한 사건이 1건, 婢가 남편 및 사위, 雇工과 공모한 사건이 1건, 同類의 노비와 공모한 사건이 5건이고 성종대는 婢가 남편과 공모한 사건이 3건, 本主의 친척과 공모한 사건이 1건, 婢夫와 공모한 사건이 1건, 同類의 노비와 공모한 사건이 11건이다.

개인이 아니라 공모 특히 同類의 노비가 공모하여 本主를 죽이는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곧 殺主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殺主의 이와 같은 양상은 노비가 주인을 살해하는 정황 및 목적을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함으로써 살주의 동기가 확인된 사건이 희소한데서 오는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범행의 결과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범죄를 감행한다. 즉 그것이 재물획득 등의 유형의 목적이든 원한관계의 해소, 복수의 단행 등의 무형의 목적이든 범죄자에게는 범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살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정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를 통하여 가해자가 얻을 수 있는 일련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단독범행일 경우 목적이나 동기가 개인적인 의미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면 공모일 경우에는 살인에 가담한 여러 사람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동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本主를 죽이게 될 경우 여러 명의 노비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이였을까? 殺主라는 의미에도 드러나듯이 이들은 같은 주인의 노비들이다. 즉 이들은 노비로서 그 신분이 동일하고 같은 주인에게 소유되어 있던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힘을 모아서 本主를 죽인다면 자

신들을 통제하고 강제할 존재가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인신적인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통해서 볼 때 노비의 殺主는 본주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단독범행일 경우는 殺主가 우발적으로 감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모의 경우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⁸⁶⁾ 이를 통해 살주의 양상이 점차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종대에 同類의 노비와 공모한 사건이 세종대보다 2배가량 증가하는 등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이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던 토지소유구조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은 건국 초 이래 양인을 확대하여 公民을 늘리는 한편 토지매매 금지 규정을 통하여 농민의 소유지에 대한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국가적 지배의 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성종대 즉 15세기 말부터 차츰 부강한 자들의 토지 탈점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등 농민에 대한 국가적인 지배의 기틀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국가수취는 한층 가혹한 수탈의 성격을 띠어 감에 따라 농민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⁸⁷⁾

조선초기의 농민의 대다수는 토지 1결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농이었으며 그나마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개 척박하였다.⁸⁸⁾ 우마를 사육할 수 없었던 빈궁한 농가에서 제대로의 施肥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畜力을 이용한 深耕 또한 거의 불가능 하였다. 이처럼 영세한 영농조건과 빈한한

86) 『成宗實錄』 卷 153 成宗 14年 4月 辛卯 “刑曹據慶尙道觀察使金自貞啓本啓 私奴金生謀殺本主南觀 其妻權德與謀 請窮推抵罪 命議于領敦寧以上……盧思愼議 金生欲殺本主 與諸奴婢謀 議已久……命更示于政府 徐居正 李克增議 金生殺主之謀 非一朝一夕”

87) 李載樂, 『朝鮮初期 社會構造 研究』, 일조각, 1984, 220~236쪽 참조.

88) 『世宗實錄』 卷 49 世宗 12年 8月 戊寅 “戶曹具中外貢法可否之議以啓……大抵占膏腴田者 率多富強之人 占瘠薄田者 類皆貧乏之人”; 『世宗實錄』 卷 82, 世宗 20年 7月 壬辰 “刑曹判書鄭淵議曰……大概富人多執良田, 貧民所耕, 率皆瘠薄” 金泰永, 『朝鮮前期 土地制度史研究』, 지식산업사, 1983, 157쪽 재인용.

생산수단으로 인하여 소농민 경영의 분화는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과전법에 규정되었던 토지매매의 금지규정은 오래 준행될 수 없었다. 여기에 더해진 田稅·軍役·徭役·貢納 등의 가혹한 수취로 인한 경제외적 강제는 소농민의 토지 상실을 더욱 부추길 수 밖에 없었다.⁸⁹⁾

이처럼 농민이 소유한 토지를 상실하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한편 양반 사족들은 매득과 탈점, 그리고 개간을 통하여 더 많은 소유를 집적해가고 있었다. 買得을 통한 토지 집적은 실질적으로는 長利를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長利는 “장리가 아니면 흉년 飢歲에 小民의 資活할 길이 없다.”⁹⁰⁾와 같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농민이 그 재생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의존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장리는 대개 춘궁기에서 수확기까지의 반년정도의 기간에 50퍼센트의 利息이 따르는 高率의 高利貸가 관행으로 통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田地를 방매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 長利는 성종대부터 크게 자행되었는데⁹¹⁾ 이 시기에 이르러 토지집적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5세기 후반부터 田地의 탈점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초기에는 개간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개간을 통한 토지의 집적도 이루어졌다. 이 시기 개간이 크게 진척된 곳은 연해지역의 비옥한 토지와 이북지역으로서 연해지역의 水田의 所出이 일반 평지 수전의 소출보다 배나 많다고 표현되고 있어 연해지역의 개간이 크

89) 金泰永, 위의 책, 1983, 145~185쪽 참조.

90) 『成宗實錄』卷 44 成宗 5年 윤6月 更子 “御經筵 講訖 領事洪允成啓曰……如非長利 凶年飢歲 小民無以資活”

91) 『成宗實錄』卷 22 成宗 3年 9月 壬寅 “御經筵 講訖 檢討官成倪啓曰……今勤御經筵 聽言納諫 民間積弊 剷除殆盡 減諸道貢膳 蠲內需寺長利 爲賜多矣 猶民未蘇復者 只緣豪強者濫徵積債 民不堪苦 其所耕田 盡納巨室 民無立錫之地 巨室積穀 倍於官府 而義倉之粟 大半不收 少遇凶歉 勢難周給 無知之民 更貸私債 年年取息 終至失所 強者爲盜 弱者離散 十室九空 誠爲可嘆” ; 『成宗實錄』卷 44 成宗 5年 윤6月 甲辰 “司憲府大司憲李恕長等上疏曰……世宗朝宰相之有長利以富稱者蓋寡 今則高官厚祿者 皆有長利以益其富 園田遍山野 蓄積侷州縣 乘富貴之力 分遣豪奴悍僕 侵刻小民 民安得不至於貧歟?”

게 각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⁹²⁾ 또한 당시 농업생산의 후진지역이던 평안·황해·함경·강원도에도 개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처럼 매득과 탈점, 개간 등의 방법으로 집적된 토지는 농장의 형태로 존재하고 경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토지소유구조의 변화라는 근본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서는 奴主關係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요인에 대하여 살펴볼 도록 하겠다. 양인인구의 사천화 증가 문제와 농장의 경영이라는 측면이 바로 그것이다.

양인 농민층이 몰락하고 있었다면 이들은 어디로 흡수되었을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도 확인되듯이 몰락한 양인 농민들은 노비로의 투탁, 승려로의 전환, 도적으로 변신, 상업으로의 전업,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의 이동과 같은 다양한 경로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⁹³⁾ 이 가운데 본고의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노비로의 투탁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사회의 경제구조는 전적으로 농업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농업이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경제적인 자립 여부는 생산수단인 토지의 소유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無田之民이나 비록 토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정도가 극히 미약한 영세농의 경우는 경제적인 자립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15세기 후반 이후 토지매입 및 토지탈점의 성행과 더불어 지배층의 토지 확대는 계속 증가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농민의 토지소유는 크게 위축되었고 無田之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정부의 봉건적인 수취체제와 고리대의 압박 그

92) 『世宗實錄』卷 88, 世宗 22年 3月 乙丑 “議政府左參贊河濱上言曰……海澤之田 所出倍多”

93) 金盛祐, 「16세기 良少賤多 현상의 발생과 국가의 대응」, 『經濟史學』 제 29호, 2000, 37쪽 참조.

리고 자연재해도 농민의 토지이탈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의 사료는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이탈되어 고공과 노비로까지 전락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 영세민이 경작하는 전지 1결에 권세가의 경작하는 전지 7결까지 합쳐서 1인의 역부(役夫)를 내게 되니, 그 권세가의 종은 성호사서(城狐社鼠)처럼 주인의 세력을 믿고서 상시 요역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령들은 그 세력을 두려워하여 제어하지 못하고 간사한 이속들은 그러한 틈을 타서 술책을 부리니, 국가의 좋은 법과 훌륭한 뜻이 한갓 걸치레만 될 뿐입니다. 빈궁한 백성은 전지 1결을 가지고서 권세가의 7결의 요역까지 합쳐서 제공하다 보니, 농사철에 농업을 폐하게 되어 가을이 되어도 수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식(利息)을 주고 빌려서 생활하다가 이듬해 봄에 이르러서는 전답과 주택을 다 팔아서 갚고, 돌아갈 곳이 없게 되자 부유하고 세력 있는 집에 붙어서 얻어 먹으며 고용살이[傭作]를 감수하다가 마침내 노비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몹시 애통한 일입니다……” 고 하였다.⁹⁴⁾

또한 성종 9년(1478) 남효온의 상소에 “부자는 전토가 천맥(阡陌)을 연 하였으나 가난한 자는 송곳 꽃을 땅도 없으니, 혹은 부잣집에 의탁하여 종이 되고 혹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된다.”⁹⁵⁾고 한 것과 같이 지배층의 토지 집중현상으로 인해 토지소유로부터 배제되어 독자적인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있었던 대개의 양인들에게 番上 혹은 代立價를 요구하는 균역과 같은

94) 『成宗實錄』 卷 57 成宗 6年 7月 辛亥 “戶曹啓……有以殘民所耕一結 并勢家所耕七結 而出一夫 其勢家之奴 依憑城社 恒不就役 守令畏勢而莫能制 奸吏乘間而弄其術 國家良法美意 徒爲文具 窮民以田一結 并供勢家七結之役 農月廢業 秋無所收 轉轉稱貸以生 及至明春 盡賣田宅以償之 無所於歸 寄食富強之戶 甘爲傭作 終至爲奴 可爲哀痛” 姜勝浩, 「朝鮮前期 雇工의 類型과 그 性格」, 『實學思想研究』 5·6, 1995, 90~91쪽. 재인용

95) 『成宗實錄』 卷 91 成宗 9年 4月 丙午 “幼學南孝溫上疏曰……是故富者田連阡陌 貧者無立錫之地 或托富家爲奴 或剃頭髮爲僧 閭閻蕭條 什亡四五 爲監司者 專以供給需應爲賢 而不問撫字心勞”

양역은 苦役·重役이 될 수 밖에 없었다. 本役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영락한 양인들로서는 천인층으로의 투숙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대사간 이평이 와서 아뢰기를, “……, 양민은 양역이 고되고 무거워 권세가에 투탁하여 노비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 라 하였다.⁹⁶⁾

형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듣건대, 조군(漕軍)·수군(水軍)·목자(牧子) 및 모든 양민이 본역을 괴롭게 여겨 사천(私賤)으로 투숙하는 자가 자못 있다고 한다……” 고 하였다.⁹⁷⁾

위 사료들을 통하여 볼 때 양인이 苦役·重役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本役 곧 양역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투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富家 또는 勢家の 노비로 투탁하는 것은 피역하려는 양인에게 특히 생계보장의 측면과 관련하여 유력한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투탁을 감행하는 양인들에게는 노비로 전락하는 신분 하강에 대한 염려는 이차적인 것이었으며 절박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또는 더 나은 생활조건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던 셈이다.⁹⁸⁾

양인층의 노비 투숙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양인 농민층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이용하여 권세가나 유력층이 강제로 그들의 몰락을 유도하는 이른바 壓良爲賤 방식이 그 하나이고, 몰락에 직면한 양인 농민층

96) 『成宗實錄』 卷 240 成宗 21年 5月 丁卯 “大司諫李杵等來啓曰……父子嫡妾分揀事 世不常有 至於良民則良役苦重 願托勢家爲奴者 頗多”

97) 『成宗實錄』 卷 285 成宗 24年 12月 壬午 “傳于刑曹曰 今聞 漕軍水軍牧子 及一應良民 苦於 本役 投屬私賤者 頗有之” 이밖에 비슷한 사례로 『成宗實錄』 卷 40 成宗 5年 3月 癸卯와 『成宗實錄』 卷 40 成宗 5年 3月 甲辰 등을 들 수 있다.

98) 池承鍾, 앞의 책, 1995, 101~145쪽 참조.

이 유력층의 가호로 투속하는 자발적인 투탁 방식이 하나였으며, 사족가문에서 몰락을 앞둔 양인층을 대상으로 그들 보유의 노비와 혼인을 맺게 하는 방식, 곧 良賤交婚이 또 다른 방식이었다.⁹⁹⁾

강압에 의한 압량위천은 被壓者 측의 대항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압량위천이 불법화되어 처벌되는 상황하에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세종 14년(1432) 권진의 아들 권맹경이 勢家임을 믿고 양인 구만을 도망한 奴라 冒稱하고 압량위천하려다가 구만의 저항을 받아 처벌된 사례를 들 수 있다.¹⁰⁰⁾ 조선은 억울하게 노비로 된 양인에게 ‘訴良’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¹⁰¹⁾ 그러므로 압량위천은 대상 양인의 良籍이 없거나 不明한 상태와 같이 피압자 측의 訴良 등의 대항 가능성이 거의 봉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투탁은 양인의 自願 즉 투탁하여 노비가 되려는 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그만큼 적었으므로 受托者의 입장에서 노비를 거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¹⁰²⁾

양천교혼은 투탁의사가 있는 양인층을 대상으로 主家の 보유노비와 혼인시켜 그들 소생을 노비로 만드는 방식으로서 主家측에서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노비가 확대재생산 될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이었다. 게다가 교혼한 양인의 소생을 노비로 전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식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요소가 최대한 희석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主家는 그들이 보유한 노비들을 혼인시킬 때 양천교혼을 적극 장려하는가 하면 강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¹⁰³⁾

99) 金盛祐, 앞의 논문, 2000, 37쪽 참조.

100) 『世宗實錄』卷 56 世宗 14年 6月 戊子 “司憲府上疏曰……權孟慶恃勢忘義 良人仇萬 冒稱逃奴 陰誘郭隣 以良爲賤 據奪家財”

101) 『經國大典』卷 5 刑典 決獄日限 “凡誤決 如父子嫡妾良賤分揀等項 情理迫切事許卽訴他司”

102) 池承鍾, 앞의 책, 1995, 103쪽 참조.

103) 金盛祐, 앞의 논문, 2000, 14쪽 참조.

토지로부터 배제되어 생계를 자립할 수 없었던 농민들은 이처럼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雇工이 되거나 奴 또는 婢와 혼인함으로써 노비소유주에게 의탁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고공은 몰락한 양민으로서 민호를 이루지 못하고 양반사족에 기속하는 예속적 노동인구로서 그 신분이 당대에 한한다는 점에서는 노비와는 구별되지만, 가장에게 예속되어 일하는 예속적 노동관계에 있다는 점에서는 그 처지가 노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고공과 가장의 관계는 奴主之分과 동일하게 규정되었고¹⁰⁴⁾ 비부 또한 노비와 다를 것 없는 조건에 있었다.¹⁰⁵⁾

이상과 같은 몰락 양인들의 사노비로의 투탁과 고공화, 양반들의 노비 증식으로 인한 奴妻와 婢夫의 양산은 필연적으로 私賤 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成宗 9년(1478) 주계부정 심원의 上書에 “지금 백성 가운데 십중팔구가 私賤이 되고 良民은 겨우 한둘 뿐입니다.”¹⁰⁶⁾ 라고 표현된 것은 어느 정도 과장된 것임을 감안 하더라도 이 시기에 사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인이 私賤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정되었던 奴主之分의 해이를 조성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 노비는 토지 등과 마찬가지로 소유의 대상으로서 재물과 같이 취급되었지만 일단 本主와의 관계에 들어서면 노비는 本主에 대해 綱常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처럼 규정되고 강요되었다. 이것은 노비소유자들로 구성된 당대의 지배층이 노비의 절대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고 정당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노관계에 인륜적 성격을 부

104) 『成宗實錄』 卷 270 成宗 25年 5月 乙巳 “刑曹據京畿觀察使李世佐啓本啓……刑曹判書成健啓曰 天屬之親 其義雖重 而歐殺之罪輕 家長與雇工有奴主之分 其罪重 故臣等以此論斷”

105) 『成宗實錄』 卷 14 成宗 3年 正月 丙午 “……傳曰 婢夫與奴無異 帶行何妨 漢學訓導 亦是文臣之任 何拘於經筵官乎”

106) 『成宗實錄』 卷 91 成宗 9年 4月 己亥 “朱溪副正 深源 上書曰……今者 齊民之中 私賤十居八九 良民僅一二”

여하였던 것으로 원래 三綱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주노관계를 군신관계와 동일시하여 강상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규정하였던 것을 나타낸다.¹⁰⁷⁾ 노비 소유자들은 이 인륜적 성격을 주노관계를 인식하는 틀로 만들어 스스로 노비지배를 정당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비에게도 같은 인식들을 강요하고 세뇌함으로써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바탕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¹⁰⁸⁾

私賤 인구의 증가는 표면적으로는 신분제에 의한 인신적인 지배예속관계가 확대되어 노비소유주의 노비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노비통제력의 약화가 진행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양인층 내부의 婢夫·雇工으로의 하향분화와 양인의 노비투탁 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그동안 엄격하게 지켜져 왔던 양천간의 위계질서가 동요되고 변질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雇工과 婢夫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신분으로서 雇主와 婢主에게 충성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을 것이다. 그리고 압량위천의 경우나 역을 피하기 위해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세가에 투탁하여 양인이 노비가 된 경우 또한 대대로 世傳되어 主家에 예속되어 있는 노비와 本主를 대하는 태도 및 충성의 정도가 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성종대 즉 15세기 후반에 비부나 고공, 동류의 노비들이 공모하여 本主를 살해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해 가고 있었던 단서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인의 몰락으로 인하여 노비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과정

107) 『世宗實錄』卷 37, 世宗 9年 9月 己丑 “吏曹判書許稠言於知申事鄭欽之曰……君臣父子奴主之間 其體一也”; 『世宗實錄』卷 51 世宗 13年 3月 己丑 “上御思政殿 命左代言金宗瑞曰……蓋主奴與君臣一也 爲臣不忠之念一萌 便是謀叛 卽是不赦之罪 爲奴者訴良之心一萌 便是背主 亦是不赦之罪”; 『世宗實錄』卷 62, 世宗 15年 10月 辛酉 “刑曹啓……主奴 一家之君臣”; 『世祖實錄』卷 7, 世祖 3年 3月 戊寅 “判書雲觀事梁誠之上言……奴婢之分 猶君臣也”; 『成宗實錄』卷 33, 成宗 4年 8月 癸亥 “司憲府大司憲 徐居正等上疏曰……奴之於主 有君臣之分”

108) 池承鍾, 앞의 책, 1995, 288~299쪽 참조.

에서 양산된 노비는 강상의 윤리에 입각한 주노관계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지배의 정당화에 세뇌당하는 과정을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이에 따라 本主의 수탈적인 성격과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노출될 경우 그 저항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비록 생계가 막막하여 勢家에 노비로 투탁하기는 했지만 본래 양인신분이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노비라는 신분을 일종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또한 기존의 世傳되는 노비들도 이들의 영향으로 본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절대적인 충성까지는 아니지만 本主에 대한 복종을 당연시 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온 종래의 노비들에게 殺主는 경우에 따라 개인적으로 자행될 뿐 감히 다른 사람에게 입 밖으로 꺼내 놓아서도 안되는 不忠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모의를 하고 또 집단적으로 실행에 옮길 정도로 奴主之分이 해이해지고 동요되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奴主之分의 동요와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생산력 증대에 따른 노비의 신분상의 처우 개선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리라는 점이다. 이를 노비의 농업경영형태의 하나인 작개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¹⁰⁹⁾

15세기 후반 이후 가속화된 토지집적으로 인하여 양반 사족들의 농장의 확대는 당연한 귀결이었고 그 경영에 노비노동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농장의 경영은 主家가 직접 간여하면서 노비노동을 이용하거나 혹은 노비나 타인에게 대여하여 分半打作 하는 등 여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노비노동을 통한 농지경작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다. 이를 主家가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노비노동을 통제 감독할 수 있었는가의 정도를 기

109) 작개제의 운영에 관해서는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참조.

준으로 구분해보면 크게 家作과 作介로 나눌 수 있다. 가작은 主家나 農舍 주위에 10호 안팎의 奴婢家를 배치하고 이들의 노동력을 동원 지휘하여 농지를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작개는 노동력의 형편을 감안하여 일정량의 토지를 작개지로 분여하여 경작시켜 일정액수 이상 수확물을 바치도록 정하되 그 대가로 私耕을 분급하여 그 소출은 해당 노비의 몫으로 삼게 하는 방식이다. 가작은 지주가 직접 노비 등 예속인을 동원하여 농사를 짓는 경영형태였기 때문에 主家 인근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작개는 지주가 노비에게 작개지와 사경지를 짝지어 나누어주고 지주는 작개지 수확물의 거의 전량을 수취하고 노비들은 사경지의 수확물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작방식이었기 때문에 원격지 농장의 경영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작개는 전답 소유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조선전기에는 개간에 의해 형성된 전답이 많았으며 지주와 개간의 주체가 다를 경우 지주가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개간지와 같이 지주의 권리행사가 제약당하는 전답에 작개를 적용하면 병작을 적용할 때보다 더 원활한 지대수취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주가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답에서는 신분제와 같은 경제외적 강제외의 도움 없이도 즉 병작을 해도 원활한 지대수취를 기대할 수 있었다. 즉 지주들은 소유구조가 다소 복잡한 전답의 지대를 원활하게 수취하기 위해 작개를 적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작개에서 노비의 수취액은 主家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主家에 유리할 수 밖에 없었다. 작개제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작개지는 논 중심으로 사경지는 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¹¹⁰⁾ 따라서 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가치액을 갖게 되는

110) 김건태는 『治家法制』와 『權誅男妹和會文記』의 분석을 통해 작개지와 사경지의 구성비를 산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治家法制』의 경우 작개지의 82.3%가 논이고 밭은 17.7%인 반면 사경지는 논이 35.9%이고 밭이 64.1%이다. 『權誅男妹和會文記』의 경우는 작개지는 모두 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경지는 모두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김건태, 앞의 책, 2004, 107쪽 참조.

노비는 논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가치액을 갖는 주인보다 수취액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 노비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작개보다 하나의 토지에서 수확된 곡물을 지주와 경작인이 반분하는 병작을 선호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개에 동원되던 노비들의 저항이 격렬하게 표출될 수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연작상경화가 이루어진 고려말이래 지속적으로 생산력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農學의 발달 및 농업생산기술의 고도화, 畜力의 확대와 農具의 새로운 개발과 아울러 15세기 말엽에 이르면 그동안의 벼농사 발달에 큰 제약을 주던 수리기술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전통적인 수리방식인 堤堰이 가지는 한계성을 川防, 곧 洑의 개발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15세기에 이르기까지 수리기술은 山谷의 流溪를 가로막아 활용하는 방식인 堤堰 하나뿐이었다. 고려말엽부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하천수를 관개수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水車의 보급이 시도되었지만 滲漏가 심한 지질상의 문제로 끝내 성공하지 못하다가, 15세기 중엽에 그 대안으로 川防으로 방식을 바꾼 것이 성공하여 15세기 말엽부터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수리수단의 획득은 수리의 혜택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을 뜻하므로 이와 같은 성과는 벼농사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¹¹¹⁾ 이처럼 이 시기에는 농업생산력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시기였으며 생산력이 향상될수록 작개에 동원되던 노비들의 저항도 그만큼 격렬하게 진행되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앞서 인명범죄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시기의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노비의 효율적인 소유를 실현하기 위한 본주의 통제 강화와 이로부터 벗어나기를 꾀하는 노비의 저항 심화로 말미암아 갈등

111) 李泰鎭,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79~81쪽 참조.

을 겪고 있었다. 노비는 그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인 동시에 주인으로 하여금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서의 가치도 지니는 것으로서 노비 소유주에게 중요한 재산이자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조선 초기는 노비 노동력만 있으면 개간을 통하여 토지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이 있는 땅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노비는 주인들의 전지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이었고 집적된 토지로 인하여 확대된 농장을 경영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이었다. 따라서 노비 소유주들은 양천교혼 등을 통한 노비의 수적 증가를 꾀함과 아울러 私刑을 통해 노비의 효율적인 소유를 꾀하였던 것이다.

한편 노비는 본주에게 소유되어 지배당하는 존재였다. 본주의 노비 지배는 경제적인 수탈이든 노동력의 수탈이든 어떤 식으로든 수탈의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또한 노비는 자신의 재산소유나 거주지의 선정 및 배우자의 선정 등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주인에게 극히 통제당하고 있었다. 여기에 가해진 주인의 私刑은 경우에 따라 노비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참기 괴로운 것이었다. 살주는 발각되면 능지처사에 처해지는 중죄였기 때문에 살주를 감행하는 노비입장에서도 그만큼 절박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이었다. 즉 주인을 죽이는 경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주인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살주를 감행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노비라는 존재에 대해 서로의 이익관계가 달랐던 것이 奴主간의 갈등을 촉발시킨 귀결점이었고 그 극단적인 형태가 인명범죄의 발생이었다.

그런데 살펴본대로 15세기 후반 이후 殺主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곧 노비와 주인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비소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엄정하게 규정되었던 奴主之分은 동요되고

있었고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노비의 신분상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 주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노비들로 하여금 저항의 강도를 한층 거세게 드러내게 하였고 동류의 노비들과 모의 작당하여 주인을 살해하는 경우가 殺主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대범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제 殺主는 개별적인 방법에서 점차 집단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변화와 아울러 점차 殺人과 그 의미가 동등해지는 변화를 겪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주인과 노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그 극단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 있는 인명범죄로의 발생 가능성이 점점 더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즉 15세기 후반 이후 奴主關係는 점차 본주의 노비 통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노비의 저항의 측면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V. 結論

지금까지 조선초기의 노비와 노비소유주 사이에서 발생한 인명범죄의 사례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인명범죄의 발생 원인과 인명범죄 양상의 변화, 그리고 奴主關係의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태조대부터 성종대에 이르는 103년 동안 실록에 기록된 인명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45% 정도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주관계의 인명범죄는 2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관과 민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기록된 인명범죄의 적지 않은 수가 奴主關係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노비와 주인의 관계가 상당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였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노주관계의 인명범죄를 노비에 대한 주인의 인명범죄와 주인에 대한 노비의 인명범죄로 나누어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노비에 대한 주인의 인명범죄는 私刑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濫殺과 酷刑의 형태로 나타났다. 주요원인은 노비의 도망 즉 主家の 경제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에 있었으며 이 밖에 주인에게 원망의 말이나 모해하는 말을 한 경우, 주인의 비첩을 간통한 경우 및 본주의 비 간통으로 인한 女主的 妬忌와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었다. 私刑으로 인한 인명범죄는 노비가 본주를 告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각될 가능성이 적었고 그런 만큼 주살노비의 현실적인 가능성도 높았다. 주인에 대한 노비의 인명범죄의 주요 원인은 주인의 신체적·성적·경제적 침탈에 있었으며 아울러 세조대 이후로 주인의 가혹한 행위에 대한 저항 및 복수로 인한 殺主에서 신공 납부의 거부, 변방

입거를 피하기 위해 殺主를 감행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바꾸려는 노비의 주체적인 의사가 반영된 殺主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었다.

4장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奴主關係 인명범죄의 원인과 양상도 점차 큰 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통하여 奴主關係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15세기 후반 이후 지배층의 토지집적과 정부의 봉건적인 수취체제 등으로 인하여 몰락한 양인들의 사노비로의 투탁과 고공화, 양반들의 노비증식으로 인한 奴妻와 婢夫의 양산은 필연적으로 私賤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것은 곧 엄격하게 규정되었던 奴主之分의 해이를 조성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관념적인 변화와 아울러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노비의 신분상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비들로 하여금 저항의 강도를 한층 거세게 드러내게 하였고 점차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殺主를 감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노주관계에서 발생하는 인명범죄는 노비와 주인의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인명범죄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제적인 기반인 노비의 상실을 달가워할 리가 없었고 노비의 입장에서는 발각될 경우 陵遲處死에 처해지는 殺主를 선뜻 저항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주관계에서 발생한 인명범죄의 양상변화를 통해 이 시기의 노주관계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명범죄를 통하여 살펴본 이 시기의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노비의 효율적인 소유를 실현하기 위한 본주의 통제 강화와 이로부터 벗어나기를 피하는 노비의 저항 심화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주관계는 15세기 후반의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변화를 겪게 되었다. 양민인구가 천인으로 하향 분화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었던 奴主之分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 노비의 신분상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어 감에 따라 15세기 후반이후 奴主關係는 점차 본주의 노비 통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노비의 저항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參考文獻

1. 자료

『朝鮮王朝實錄』

『大明律直解』

『經國大典』

2. 연구논저

1) 저서

金淇春, 『朝鮮時代 刑典』, 삼영사, 1990.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金容晚, 『朝鮮時代 私奴婢研究』, 집문당, 1997.

金泰永, 『朝鮮前期 土地制度史研究』, 지식산업사, 1983.

徐壹教,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 박영사, 1974.

歷史學會 編, 『노비·농노·노예 - 隸屬民의 比較史-』, 일조각, 1998.

吳甲均, 『朝鮮時代 司法制度研究』, 삼영사, 1995.

李景植, 『朝鮮前期 土地制度研究Ⅱ - 농업경영과 지주제-』, 지식산업사,
1998.

李相協, 『朝鮮前期 北方徙民 研究』, 경인문화사, 2001.

李載稟, 『朝鮮初期 社會構造 研究』, 일조각, 1984.

李在祥, 『刑法總論』, 박영사, 1995.

李泰鎮, 『朝鮮儒教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全炯澤, 『朝鮮後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89.
鄭奭鍾, 『朝鮮後期 社會變動研究』, 일조각, 1983.
池承鍾, 『朝鮮前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95.
최재천 외, 『살인의 진화심리학 - 조선후기의 가족살해와 배우자 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 학위논문

朴晉勳, 「麗末鮮初 奴婢政策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沈載祐, 「『審理錄』 研究 - 正祖代 死刑犯罪 처벌과 社會統制의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安承俊, 「朝鮮前期 私奴婢의 社會經濟的 性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鄭泰憲, 「朝鮮初期 社會犯罪에 관한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8.
崔楨鏞, 「朝鮮初期 奴婢犯罪의 分析 : 『조선왕조실록』 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7.

3) 논문

姜勝浩, 「朝鮮前期 雇工의 類型과 그 性格」, 『實學思想研究』 5·6, 1995.
金盛祐, 「16세기 良少賤多 현상의 발생과 국가의 대응」, 『經濟史學』, 29,
2000.
김진혁, 「殺人犯罪의 特性 및 對應方案」, 『韓國公安行政學會報』 13, 2002.
金濼, 「『新註無冤錄』 과 조선전기의 檢屍」, 『法史學研究』 27, 2003.

- 金滌, 「奎章閣 소장 '檢案'의 기초적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4, 1998.
- 김훈식, 「여말선초의 민본사상과 명분론」, 『애산학보』 4, 1986.
- 沈羲基, 「16세기李文樞家の奴婢에 대한 體罰의 實態分析」, 『國史館論叢』 97, 2001.
- 沈羲基, 「朝鮮時代の 殺獄에 關한 研究(I)」, 『法學研究』 제 25권 제 1호, 釜山大學校 法科大學·法學研究所, 1982.
- 申東根·金容晚, 「朝鮮時代 兩亂期 奴婢層의 存在形態」, 『嶺南專門大學 論文集』 21, 1992.
- 安承俊, 「朝鮮時代 私奴婢 推刷와 그 實際 - 榮州 仁同張氏所藏 古文書를 中心으로-」, 『古文書研究』 8, 1996.
- 俞起濬, 「朝鮮初期 奴婢犯罪와 刑政」, 『湖西史學』 16, 1988.
- 李榮薰,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前期 奴婢의 經濟的 性格」, 『韓國史學』 9, 1987.
- 李載勳, 「朝鮮前期의 奴婢研究」, 『論文集』 4, 崇田大學校 1971.
- 李存杰, 「殺人犯罪의 原因과 對策」, 『法學研究』 5, 韓國法學會, 2000.
- 李弘斗, 「壯勇隊를 통한 朝鮮時代 賤人의 身分變動 -公私賤 內奴의 身分上昇을 中心으로-」, 『實學思想研究』 8, 1996.
- 全用宇, 「朝鮮初期 兩班들의 노비관련 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 『湖西史學』 17, 1989.
- 全炯澤, 「조선후기 私奴婢의 推刷」, 『全南史學』 6, 1992.
- 全炯澤, 「奴婢制度 및 그 變遷에 關한 諸說의 整理 -朝鮮時代の 奴婢 研究를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68, 1996.
- 全炯澤, 「노비의 저항과 해방」, 『역사비평』 1996년 가을호, 1996.
- 鄭鉉在, 「鄭鉉在, 「朝鮮初期의 奴婢에 關한 一考察 - 奴婢人口 문제를 中心으로-」, 『慶尙史學』 4·5合輯, 1989.

【ABSTRACT】

A Study on slave-master relationship (奴主關係)
in the Early Chosun Dynasty
- focused on fatal crimes-

Jeon, Se Young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the slave-master relationship (奴主關係), centering on fatal crimes committed between slaves and their masters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hrough this, it looked into how the resistance of slaves was unfolded and what problems were inherent in the slavery system. In addition, it also revealed the way conflicts were expressed in slave-master relationship and the trend in the changing slave-master relationship.

chapter 2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s and assaulters was analyzed by reviewing documents recorded for more than 100 years from the reign of King *Taejo*(太祖) to the reign of King *Sungjong*(成宗). As a result, crimes among family members accounted for the most, 45% and crimes in slave-master relationship came in the

second, accounting for 24%. Through this, it was concluded that there were not a few fatal crimes in slave-master relationship. Moreove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a significant amount of conflicts and frictions between slaves and masters.

chapter 3 the causes of fatal crimes in slave-master relationship were classified in two categories: crimes committed by masters to slaves and crimes committed by slaves to masters. Crimes by masters were committed for the excuse of vigilantes and took on two forms such as indiscriminate murders and severe punishments. The charges were mostly attempted escapes, in other words economic loss inflicted to masters. Crimes by slaves to masters were caused mainly by either physical or economic deprivation by masters.

chapter 4 was dedicated to investigating the trends of slave-master relationship, focusing on the dramatic change in the causes and aspects of fatal crimes in slave-master relationship in the late 15th century. The 15th century was when peasants' deprivation of land was accelerated due to the government's harsh exploitation and land accumulation by the ruling class. The population of *Sacheon*(私賤) had been rapidly growing due to *Gogonghwa*(雇工化),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ocheo*(奴妻), *Bibu*(婢夫) from *Yangin*(良人)-*Cheonin*(賤人) inter-marriage (良賤交婚), and the fact that ruined commoners were reduced into private slaves. Accordingly, the justification for the slavery system which had rationalized masters' exploitation of slaves started shaking. Furthermore, slaves asked for the improvements of their conditions as the productivity of

agriculture increased. Along with the socio-economic changes, there were shift in the perception of the treatment of slaves and masters, which allowed murders of masters by slaves to develop into collective crimes and made their resistance more violent.

The conflicts and frictions of slave-master relationship in the Early Chosun Dynasty grew from the opposing attributes between masters' control to realize efficient mastership of slaves and slaves' resistance in order to escape from masters' reinforced control of social and economic status. Such slave-master relationship gradually revealed its limitations in the late 15th century and slaves' resistance developed in a more aggressive way.